전북특별자치도

도 보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제3077호 2026. 11. 13.(금)

www.jeonbuk.go.kr

조 례

○ 조례 제6049호 전북특별자치도 체감성장 기본 조례 ····· 1
○ 조례 제6050호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조례 ····· 6
○ 조례 제6051호 전북특별자치도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조례 ····· 8
○ 조례 제6052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조례 제6053호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13
○ 조례 제6054호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5
○ 조례 제6055호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조례 제6056호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조례 제6057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조례 제6058호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 조례 제6059호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조례 제6060호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 조례 제6061호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조례 제6062호 전북특별자치도 임금체불예방 조례 ····· 36
○ 조례 제6063호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 조례 제6064호 전북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42
○ 조례 제6065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 조례 제6066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47
○ 조례 제6067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2
○ 조례 제6068호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 ····· 53
○ 조례 제6069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57
○ 조례 제6070호 전북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9
○ 조례 제6071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62

고 시

○ 고시 제2026-348호 공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64
○ 고시 제2026-350호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 65

발행 전북특별자치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92)
(54968)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고시 제2026-351호 국립정읍숲체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고시 ····· 75
○ 고시 제2026-352호 봉서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고시 ····· 77
○ 고시 제2026-353호 덕천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9
○ 고시 제2026-354호 원당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 80
○ 고시 제2026-355호 원당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2

공 고

○ 공고 제2026-1829호 공인 등록 공고 ····· 83
○ 공고 제2026-1835호 도로공사 시행(변경)허가 내용 공고 ····· 84
○ 공고 제2026-1840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전북문화산책) ····· 85
○ 공고 제2026-1841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재단법인 이철량미술문화재단) ····· 86
○ 공고 제2026-1843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 87
○ 공고 제2026-1844호 비영리사단법인 대표자 변경 허가 공고 ····· 88
○ 공고 제2026-1846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 89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6-16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90
○ 군산시 공고 제2026-250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 92
○ 정읍시 고시 제2026-1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4
○ 남원시 공고 제2026-2466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 100
○ 남원시 공고 제2026-2467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 114
○ 김제시 고시 제2026-161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116
○ 김제시 고시 제2026-165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74호선, 2-17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18
○ 완주군 고시 제2026-130호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소로2-2호선, 공공청사비봉면행정복지센터)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24
○ 고창군 고시 제2026-196호 고창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26

이 하 여 백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체감성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49호

전북특별자치도 체감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체감성장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전북 중심의 자생적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감성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자원·인재·기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 내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 및 도내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말한다.
2. “체감성장 정책”이란 체감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제·산업·문화·농생명·관광·에너지·복지 등의 정책 및 사업 중 제5조·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된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감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체감성장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감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체감성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체감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체감성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3. 직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4.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6. 그 밖에 체감성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체감성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연도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
2. 사업별 추진계획 및 소요재원
3.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방안
4. 그 밖에 체감성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체감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체감성장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체감성장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체감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체감성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체감성장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체감성장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의 체감성장 관련 정책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체감성장 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경제산업·농생명·문화관광·사회복지·생태환경 등 성장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체감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체감성장 관련 도민 의견수렴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체감성장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 중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사항을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또는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조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임하여 심의·조정한 사항은 차기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체감성장 정책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체감성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감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부지사인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체감성장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 발굴·자문, 심의·조정, 연구·토론, 평가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분야 소관 실·국의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명칭,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

2. 분과위원회 간 협의 및 조정
3.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각 분과위원장
2. 기획조정실장
3. 체감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③ 운영위원장은 위촉직 부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지사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체감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성격상 대면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 기관·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50호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도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의 장 및 임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계 법령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51호

전북특별자치도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전략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결혼 장려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를 정착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지속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 장려여건”이란 결혼과 가족의 가치가 존중되고 건전한 결혼 문화가 정착되어 결혼과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을 말한다.
2. “공공예식장”이란 건강한 예식 문화 조성 및 결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 또는 공간으로서 결혼식 장소로 개방·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서비스업체”란 예식장 운영,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튜디오·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등을 포함한다) 등 결혼식의 준비 또는 진행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혼 장려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시행계획 반영 등) ① 도지사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행계획에 결혼 장려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장려여건 조성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연도별 목표
2. 결혼 장려여건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
3.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방법
4.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여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 장려여건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다음 연도의 지방시행계획에 포함된 결혼 장려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결혼 장려여건 조성에 필요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서비스업체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결혼 장려여건 조성 사업) 도지사는 결혼 장려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준비교육 및 결혼·가족생활 관련 정보 제공 사업
2. 소규모 결혼식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 사업
3.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결혼식 공간 제공 및 공공예식장 조성·운영 사업
4. 결혼서비스의 종류·이용요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안내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5. 결혼과 가족생활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결혼 장려여건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공예식장 조성·운영 및 이용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도가 관리·운영하거나 관리주체와 협의한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공예식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이 공공예식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예식장의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 중 한 명 이상이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 본인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공예식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용 대상자가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예식장 사용료, 기본시설·장비 사용료 등 결혼식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신청 및 지급 절차,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금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결혼서비스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① 도지사는 결혼서비스업체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결혼서비스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표준약관이 있는 경우 표준약관의 사용 및 게시
3. 이용요금, 추가 비용 및 환급·취소 조건 등의 구체적 표시·게시
4. 그 밖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권장사항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결혼서비스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도가 운영하는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결혼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권장사항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선정·공표·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군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결혼 장려여건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결혼 장려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2027년도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52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도정참여 방식을 말한다.

제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와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년정책참여기구(이하 “참여기구”라 한다)을”을 “청년정책참여기구(이하 “참여기구”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참여기구은”을 각각 “참여기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참여기구을”을 “참여기구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참여 활성화 및 참여기구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
5.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지원사업
6.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제25조제1항제8호 중 “포럼단”을 “참여기구”로 한다.

제26조 중 “포럼단”을 각각 “참여기구”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

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참여대상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53호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며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말한다.
3.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읍·면·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시·군 주민자치협의회·연합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다.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시·군, 도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
2.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4. 다른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5.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7.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자치 발전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54호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산위원회의 기능)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나.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다.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라.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중요한 수리와 복구에 관한 사항
   마.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사.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아.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매수·취득에 관한 사항
   자.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차. 그 밖에 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나. 도자연유산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다. 도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라. 도자연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마. 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바. 도자연유산의 국외 반출·입에 관한 사항
사. 도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나.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다.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명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제3조(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서지학, 고문헌학, 인류학, 사회학, 건축, 도시계획, 관광, 환경, 법률, 종교, 언론,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동·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보존과학 분야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위원은 1회까지, 그 밖의 위원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유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국가유산의 유형별・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회의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⑦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⑧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제1분과위원회(부동산): 제2조제2호가목부터 차목까지에 관한 사항 중 부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제2분과위원회(동산): 제2조제2호가목부터 차목까지에 관한 사항 중 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3. 자연유산분과위원회: 제2조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분과위원회: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중 해당 분과위원회의 소관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의 역할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합동분과위원회) ① 합동분과위원회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둘 이상의 분과위원

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합동분과위원회”로, “분과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장”으로, “분과부위원장”은 “합동분과부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 위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사전에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는 조사·검토 결과를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도지사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4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전문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전문위원의 위촉에 관해서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전문위원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정된 해당 분야 전문가(이하 “위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의 조사 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등 또는 위원등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등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기피신청 대상 위원등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따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도지사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국가유산수리업자·실측설계업자·감리업자, 문화유산매매업자, 매장유산 발굴 관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상근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5. 분과위원회 개편 등으로 해당 분과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8. 제1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등의 조사·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같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례 제82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위원회에 조사·심의가 요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조사·심의가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 및 전문위원이 새로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그 위원 및 전문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1분과위원회 및 문화유산제2분과위원회(이하 “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2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전북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 또는 “도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3호에 따른 자연유산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 중 “위원회”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55호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전시관, 교육관 및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나 기상악화, 시설공사 등 관람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전시관을 휴관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오전 9시”를 “09:0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람시간 및 장소를”을 “관람시간을”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관리자”를 “수탁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이나 기념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에 관하여는 「민법」 등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 등 지급에 대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대관결정의 통지”를 “대관허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제1호 이외의 대관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제20조 중 “관리의무”를 “주의의무”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유물평가 위원회”를 “유물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북자치도”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출장비 및 심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 등 지급에 대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전북자치도의 예산”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유”를 “전북자치도의 소유”로 한다.

제29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실물 원형”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직원채용 지원서류 등 채용과 관련한 문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북자치도”로, “하다”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4항 본문 중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를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상에 관하여는 「민법」등에 따른다.

제38조제3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 그”로, “배상할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다”를 “배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상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관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관허가를 받고 대관료를 납부한 자에 대한 대관료 반환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대관시설의 범위 및 대관료(제13조 및 제17조 관련)

1. 대관시설의 범위

기본시설	소강의실, 중강의실, 대강의실
부대시설	무대조명, 빔 프로젝터, 마이크

2.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단위	금액	비 고
교육관	소강의실 (80㎡)	1회(4시간 기준)	회	50,000원	· 대관시간은 오전 08:00 ~ 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로 한다 · 대관시간 중 일부시간을 사용한 경우 1회로 함 · 토요일 오후·야간, 일요일, 공휴일에는 30%를 가산함
	중강의실 (110㎡)	"	회	50,000원	
	대강의실 (375㎡)	"	회	100,000원	

3.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료	비고
냉방	교육관	소강의실	2,600원	· 시간당 단가임
		중강의실	3,600원	· 6 ~ 8월은 의무적 가동
		대강의실	12,400원	· 기온급변시 사용자 결정
난방	교육관	소강의실	4,200원	· 시간당 단가임
		중강의실	5,800원	· 12 ~ 2월은 의무적 가동
		대강의실	19,800원	· 기온급변시 사용자 결정
무대조명			20,000원	· 1회당(4시간) 단가임
빔 프로젝터			20,000원	· 1회당 단가임
마이크(개당)			2,000원	· 2개까지 무료(추가시 개당 단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56호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의2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의2에 따른 비전속진료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은 면허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57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장애·질병·사고”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을 “도민”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역량강화 사업
5. 통합지원 관련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정책개발
6. 자원봉사자 등 지역 주민의 통합지원 참여를 위한 사업

제7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전북자치도 관할 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의 통합지원 업무 관계자
5.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조직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58호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재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피해 정도, 점용 등의 제한기간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59호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그 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저소득층”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를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임대보증금등”이란 임대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임대보증금”을 “임대보증금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을 “저소득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월 임대료 지원대상 주택은 전북개발공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립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기임대주택등의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 내”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월 임대료 지원금액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월 임대료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모집공고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대보증금등 지원계획을 전북자치도,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사업비
2. 지원내용 및 기간
3. 지원기준 및 자격요건
4. 선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중 “임대보증금”을 “임대보증금등”으로 한다.

제7조 중 “임대보증금”을 “임대보증금등”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도지사와 시장·군수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월임대료”를 “월 임대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60호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5조제1항 관련)”을 “(제5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부과권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의 감경기준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참작해 과태료 부과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조항	과태료 부과 기준액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소방기본법」 제57조제1항	20만원

<비고>

부과권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다목의 감경기준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참작해 과태료 부과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서식]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 정 일 시				
장 소				
연 소 물 품 및 수 량				
목 적 (사 유)				
조 치 사 항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접수자	소속	계급	성명
접수방법		특이사항	

※ 신고방법이 구두·전화 또는 문자에 의한 경우 접수자가 본 신고서를 작성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61호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타인”을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타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온도와 습도를”을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 또는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하탱크의 배관은 해당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동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이 경우 탱크의 용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지정수량 미만으로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바닥은 물이 스며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3. 건축물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자연발화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외장을 불연재료이면서 금속재질로 할 것
나. 보냉장치를 갖출 것
다. 밀폐형 구조로 할 것
라.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마. 문 또는 창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6.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을 수납하는 옥외의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할 것
7.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600ℓ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960ℓ 이상을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7호에 따른 소화기 등은 방호대상물(해당 소화기에 의하여 소화해야 할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비치할 것
9. 금수성물질은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할 것
10.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11. 설비의 개방 또는 용기의 개봉은 건조하거나 불활성 분위기가 조성된 환경에서 할 것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2호 중 “제5조제1호 및 제7조제1호”를 “제6조제1호 및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 이 경우”를 “경우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제3항제2호에서 같다)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전단 중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정한다)”을 “이동탱크저장시설”로, “기준(보유공지(空地)는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준의 특례)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 12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정도나 화재 등의 재난에 따른 피해가 해당 각 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하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각 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종전의 제16조) 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기준에”를 “기준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기준에”를 “기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13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설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설치장소					
설치장소의 지역별	화재예방강화지구 여부		용도지역 등		
시설의 구분					
위험물의 유별·품명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배	
위치,구조 및 설비의 개요					
위험물의 저장·취급 방법의 개요					
소화설비 개요					
착 공 일	년 월 일		완 공 일	년 월 일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서명(인)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소방서장

인

※ 접 수 란	※ 경 과 란	※ 수 수 료 란
접수 연월일 : 접 수 번 호 :	승인 연월일 : 승 인 번 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5 제1호에 의한 금액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임금체불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62호

전북특별자치도 임금체불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사업장의 임금체불 및 그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지급받을 권리의 보장 및 안정된 경제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사업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임금을 지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등 중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한 금품을 말한다.
3. “임금체불예방”이란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교육, 홍보,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연계 등을 말한다.
4. “상습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업주를 말한다.
5. “취약근로자”란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6. “체불임금피해근로자”란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권리구제 또는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를 말한다.
7. “임금체불 조기경보체계”란 사업주의 임금체불 위험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상담, 교육, 컨설팅, 관계기관 연계 및 긴급대응으로 연결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8. “법률지원”이란 적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법률상담, 권리구제 절차 안내, 법률구조 전문기관 연계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법률구조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내 민간사업장 및 근로자에 적용한다.

② 민간사업장 감독 및 점검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권한과 그 사무의 범

위에서 실시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민간사업장의 임금체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자치도 임금체불예방·상습체불사업주 지원제한 및 체불임금피해근로자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예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임금체불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금체불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대상 업종 및 사업장 선정 기준
3. 임금체불예방에 관한 상담·교육·홍보 및 노무관리 컨설팅 계획
4.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제9조에 따른 임금체불 조기경보체계 구축 계획
5. 체불임금피해근로자 지원 방안
6.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계획
7. 그 밖에 임금체불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민간사업장의 임금체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임금체불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독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업 또는 사업장 감독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1.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되거나 체불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2. 농업·축산업 등 계절적·단기적 고용이 많은 업종의 사업장
3.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높은 사업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임금체불 관련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결과를 정책 수립, 행정지도, 교육 및 지원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임금체불예방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임금체불예방 정책 수립과 「노동감

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에 따라 위임받은 노동감독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임금체불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업주 대표, 그 밖에 임금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 등 우선 관리대상 설정에 관한 사항
3. 취약사업장 지원 및 상담·교육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임금체불예방 관련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금체불예방 시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임금체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정책협의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9조(임금체불 조기경보체계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상담, 신고, 실태조사, 공개된 통계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 조기경보체계(이하 “조기경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기경보체계를 상담, 교육, 예방적 컨설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며, 확인되지 아니한 위험징후만을 근거로 보조·지원 제한 또는 계약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대규모 또는 집단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및 노동권익 관련 기관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공동대응체계는 피해근로자의 신고 안내, 법률지원, 생계·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및 체불임금등 청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상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임금체불예방을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관리, 근로계약, 체불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임금체불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임금체불예방을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예방을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노동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는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협조 요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및 비밀보호) 이 조례에 따라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자료는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도지사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제한 등) ① 도지사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및 지원사업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미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상습체불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체불임금피해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체불임금피해근로자 구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피해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체불임금피해근로자의 체불임금등 청산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과 연계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상담·교육·홍보·법률지원 등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63호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지역특성화업종”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서 규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1조의2”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보조금 지원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 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 인정 범위로 한다.

1.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로 한다)에서 투자 건당 50억원 이내
2. 집단화이전의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5억원 이내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첨단업종, 연구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80억원 이내
4. 대기업 본사가 함께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300억원 이내
5. 해외사업장 청산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받거나 장비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등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4억원 이내
6.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7. 국내복귀기업이 직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숙소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복되어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에 각각의 지원을 모두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국내복귀이전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제15조제2항 및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전북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내 투자사업장의 주업종이 정부가 고시하는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50억원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의2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조(투자보조금의 소급효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 조례 시행 후 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64호

전북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기술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및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등 관계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전망
2.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방향 및 목표
3.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4.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투자촉진 방안
5.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7.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육성 및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창업·유치·정착 지원
3.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반도체산업 판로 및 경영안정 지원
6. 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7. 반도체산업 연구시설·장비 등 기반 구축 및 운영·이용 지원
8.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
9.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게 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경쟁력 강화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65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로봇·피지컬 인공지능산업

12. 반도체산업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제7조의2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7조를 제8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역산업의 적용범위(제3조제2항 관련)

분야	적용범위
미래형 자동차산업	○ 자동차산업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제조와 완성차 조립, 정비 등 전후방 연관 산업
조선 항공 산업	○ 친환경 조선·해양산업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 해상구조물 및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설계 또는 생산을 위한 복합 엔지니어링산업 ○ 항공산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산업
농·건설 기계산업	○ 일반기계산업 - 농업용기계, 건설기계를 포함한 한국표준산업분류 C29 관련 산업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와 관련된 산업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
재생 에너지산업	○ 재생에너지산업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 관련 산업
수소 에너지사업	○ 수소산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 수소에너지산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산업
탄소 융복합 소재산업	○ 탄소산업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탄소산업 ○ 섬유융복합소재산업 - 첨단기술 융복합된 의류용, 생활용, 수송/해양용, 안전보호용, 공업용, 농업용, 에너지/환경용, 바이오/메디컬용 등 융복합섬유소재 및 제품 산업 ○ 방사선산업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방사선 등 이용진흥계획에 의하여 육성·지원하는 방사선산업 ○ 전자소재산업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을 이용한 나

분야	적용범위
	노소재산업, 인쇄전자 및 3D프린팅산업
바이오산업	○ 제약산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 뷰티산업 -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과 관련된 산업 ○ 의료기기산업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와 관련한 산업 ○ 그린바이오산업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디지털·ICT융복합산업	○ 소프트웨어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융합산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과 관련한 산업 ○ 콘텐츠산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이차전지산업	○ 이차전지산업 -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방위산업	○ 방위산업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로봇산업·피지컬 인공지능산업	○ 로봇산업 -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로봇산업 ○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중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로봇·기계장치 등 물리적 시스템에 적용하는 제품·기술·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 관련 산업
반도체산업	○ 반도체산업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타	○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66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어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과 협치농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감 농정을 실현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민주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농정 현안,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 및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분야별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별도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3. “특별분과”는 위원회에서 시급하거나 중요한 농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4.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정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 농정 현안 및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체계이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관한 민관 자문기구로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민주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농어촌의 정책 방향 및 신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 발전 및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전반, 특별분과 구성·운영 및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로 운영하되, 행정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농어업인단체 관계자 및 농축수산식품 분야 생산·가공·유통·관광 관련 농어업인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축산·관광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축산·관광 관련 정부·공공기관 및 도 출연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축산·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대표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해당 분과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정책분과
2. 농촌활력분과
3. 농업소득분과
4. 식품산업분과
5. 미래축산분과
6. 수산활력분과
7. 농업기술분과

④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과 농업인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1. 분과 관련 정책 방향 마련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2. 분과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특별분과) ① 위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분과를 둘 수 있으며, 특별분과 대표는 특별분과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이 경우 특별분과의 활동기간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분과 대표는 존속기한 종료 전 활동 성과를 포함한 운영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8.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분과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이 조례에 따른 위원(특별분과 위원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분과위원회, 특별분과 위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분과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럼 운영) 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의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위하여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업무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운영 및 위원회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한 기관
2. 농어업 관련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농어촌 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리
3. 위원회 안건 발굴
4.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 등의 현장 의견 수렴
5. 농정 현안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정책 협력
6. 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 간 정책 소통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담기구의 조직, 인력, 자격기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공무원 파견)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을 전담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는 날에 그 위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67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3천7백만원”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68호

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축산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규모 축산농가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지원하고, 경영승계와 연계한 기존 축산시설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농가 중 가축의 종류, 사육시설의 면적 및 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를 말한다.
2. “경영승계”란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말한다.
3.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축산환경을 말한다.
4. “축산환경 개선”이란 축사의 시설·운영 개선, 축산악취의 저감,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위생·방역환경 개선 등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경영승계 희망자”란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업을 「축산법」 제24조에 따라 승계하려는 자를 말한다.
6. “경영승계자”란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업을 「축산법」 제24조에 따라 승계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위승계 신고를 완료한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원활한 경영승계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재산의 효율적 활용, 축산환경 개선 및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승계가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승계와 이와 연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시책) ① 도지사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승계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승계 현황 및 수요 파악
2. 경영승계 관련 행정절차의 안내 및 상담
3. 축산시설의 환경개선 및 현대화
4.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5. 경영승계 희망자 또는 경영승계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축산업 경영승계 지원
7. 시·군 및 축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영승계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축산법」 제42조의13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계획 또는 다른 축산업 관련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승계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축산농가 영업자의 연령 및 사육 규모
2. 축산업 계속 경영 및 경영승계 의향
3. 경영승계 희망자 또는 후계자 현황
4. 축사 및 축산시설의 노후화 정도
5.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현황
6.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행정적·경제적 애로사항
7. 유휴·폐업 예정 축산시설 현황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영승계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행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허가 또는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축산업의 경영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산법」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에 관한 상담 및 행정적 지원
2.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분뇨 관련 인·허가·신고 등에 대한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 지원
3. 경영승계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4.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과 경영승계 희망농가 사이의 정보 제공 및 연계
5. 그 밖에 경영승계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② 도지사는 기존에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축산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의 종류 등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영승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영업자 지위승계, 가축사육 제한 또는 그 밖의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경영승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위하여 경영승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축사의 위생·방역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축사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영승계와 연계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축산시설의 노후 정도, 주거지역과의 인접성, 악취 발생 정도 및 환경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되어 경영승계 및 관련 인·허가·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경영승계와 축산환경 개선의 연계) ① 도지사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승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축산시설의 환경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한 축산시설 등 축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력하여 맞춤형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자 선정)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경영승계자가 청년농업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
2. 축사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노후하여 환경개선이 시급한 경우
3.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하여 축산악취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경우

4. 경영승계와 동시에 악취저감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영승계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교육 및 컨설팅) 도지사는 경영승계 희망자 또는 경영승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업 허가·등록 및 영업자 지위승계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2.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
3. 축사시설 및 사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축 방역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주민과의 갈등 예방 및 상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승계 및 축산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시·군
2.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 관련 전문기관
3. 농업·축산 관련 협회 및 생산자단체
4.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5.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경영승계 희망농가 발굴, 전문상담, 교육, 축산환경 진단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의 관리)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관리·취소·반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69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원봉사자증”을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을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을 “감면받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우수자원봉사자증의 발급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하며, 발급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실적,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 공공시설 및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4조의2제5항 관련)

시설명	감면대상	감면기준
전북특별자치도종합사격장	○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전액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센터(수영장)	○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따른 사용료	50%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전액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체험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	50%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관람료	전액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70호

전북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수면”을 “수상”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및 제5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수면”을 각각 “수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6. “수난구호참여자”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수면”을 “수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난구호참여자는 수난구호활동을 할 때 관계 법령과 구조본부의 지휘·통제 등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을 “수난구호참여자”로, “경비”를 “수난구호활동에 소요된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중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비는 같은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관할 해수면”을 “관내 수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원금은”을 각각 “경비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경비 신청 및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용을”을 “경비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경비를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신속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지원금을”을 “경비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수난구호참여자 경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유류비 수급자	수급자의 성명		생년월일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선명(항공기명)	(톤)	선종(기종)	
	선장 또는 소유자		기관마력	
	사용연료	[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활동명세	시간	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
	활동상세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이름	생년월일	활동내용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찰서장 (인) 또는 소방서장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발급	→	신청	→	접수	→	지급
신청인		해양경찰서 소방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신청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 원 택 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71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제공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활용
5.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6.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 추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서비스 제공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활용 촉진
3. 기술보급확산지원단 운영 및 관련 추진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이하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③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 농업기술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회의 등에 참석한 단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또는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48호

공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서 추진 중인 공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사 업 명: 공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덕면 일원
3. 사 업 목 적: 농경지 침수저감,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등
4. 수 혜 면 적: 300ha
5. 사 업 개 요
   ○ 평 야 부: 용배수로 23조 L=8,016m(현대화 및 정비)
6. 사업 기간: 2026년 ~ 2029년 (4개년)
7. 총 사업비: 3,900백만원
8.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전화 063-540-1153)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50호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산업단지 개요(변경)

가. 명 칭 :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동, 석암동, 용제동, 팔봉동, 춘포면, 신동리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 : 3,273,736㎡**(변경)**

라. 관리기관 :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 **(변경없음)**

마. 조성목적(변경)

○ 국가경제성장에 따른 신규공장용지 수용에 대응
○ 국토균형개발과 지방공업 개발 촉진 기여
○ 미래지향적 내륙 산업단지 육성
○ 고순도 산업용가스 제조 및 공급**(변경)**

바.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사업기간 : 1984. ~ 1996.(공영개발)

사. 추진경위(변경)

○ 1987. 4.14 이리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지정 (건설부)
○ 1990. 1. 1 이리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사 및 선분양
○ 1990. 8.11 이리제2단지지방공업장려지구지정
○ 1991. 9.25 이리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 (전라북도고시제1315호)
○ 1993. 7.31 이리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198호)
○ 1994. 6. 9 이리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295호)
○ 1994. 9. 2 이리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192호)
○ 1994. 9.30 이리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205호)
○ 1995. 7.27 이리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127호)
○ 1996. 1.19 이리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4호)

○ 1996. 4. 8 이리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127호)
○ 1996. 5.15 이리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167호)
○ 1996. 9.14 이리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272호)
○ 1997. 1.24 이리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16호)
○ 1997. 7.21 이리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261호)
○ 1999. 8.23 익산제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372호)
○ 2001. 5. 7 익산제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161호)
○ 2003. 2. 6 익산제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30호)
○ 2003. 7.12 익산제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194호)
○ 2004. 9. 9 익산제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253호)
○ 2004.11.18 익산제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319호)
○ 2007. 8.31 익산제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193호)
○ 2008. 6.20 익산제2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전라북도고시제142호)
○ 2015. 7.31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전라북도고시제153호)
○ 2021. 7.23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전라북도고시제251호)
○ 2022. 2. 4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전라북도고시제25호)(변경)
○ 2025.10.31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고시제349호)(변경)

아. 분양현황(변경)

(단위 : 천㎡)

구 분	총 면 적	분양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계	3,274	2,635	85~96	토개공, 익산시
산업시설	2,565	2,565		
지원시설	70	70		
공공시설	605			
녹지시설	34			

자. 입주현황(변경)

구 분	입주업체수 (개소)			면 적 (천㎡)			비 고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계	211	2	213	2,520	45	2,565	
2026년 9월	211	2	213	2,520	45	2,565	
향후계획							

차. 입지여건(변경)

시설명	현 행	확 충 계 획(변경)
항 만	○ 군산항이용 - 접안능력 : 22선석 - 하역능력 : 3백만 톤/년 ○ 군산신항이용 - 접안능력 : 2-5만톤선좌 - 하역능력 : 35백만톤/년	○ 새만금항 - 접안능력 : 최대 8만톤급 크루즈 등 18선석(1단계 4선석) - 하역능력 : 17,291천RT/년 확보 ('컨'450천TEU 포함) - 사업기간 : '2009~2031 - 사업시행자 : 해양수산부
교 통	○ 호남고속도로 익산IC까지 10분소요 ○ 군산공항 이용 - 서울, 부산, 제주 운항 ○ 서해안고속도로 - I.C.에서 30분 소요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이용 - 강경IC까지 35분소요 ○ 호남고속철도 - 익산역에서 12분소요	○ 서부내륙고속도로(익산~평택) - 1단계(완료) : 평택~부여(94.0km) - 2단계('2029~2034) : 부여~익산(43.4km) ○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 사업기간 : '2021~2029
용 수	○ 1일공급 : 20천톤 ○ 전용공업용수시설용량 : 35천톤/년 ○ 용담댐 : 1일 135만톤	
전 력	○ 일반전력(22.9kw) - 시설용량 : 25천kw - 소요전력 : 22천kw (공단) ※공단내변전소 설치공급 : 154kV시설(변경)	
통 신	○ 전국통신망과 자동화	
환 경	○ 폐수처리시설 - 시설용량 : 41천톤/일 - 면적 : 25천㎡	

2.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변경)

가. 산업단지관리 기본방향(변경없음)

○ 내륙산업단지로서 기술집약형. 노동집약형. 비공해성 업종과 전자, 신소재, 정밀화학 등 첨단산업의 집중유치로 경제기반을 강화시키고 장차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성 있는 공간 구축

○ 공장의 업종별 규모별로 배치 계열화함으로서 생산성 향상 투자비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

○ 산업단지 종업원들의 체력증진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을 적극 개발 설치하도록 유도

○ 저공해업종 중심의 입주업체 유치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관리

나. 입주 및 사후관리 계획(변경)

1) 입주대상업종(변경)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에 의한 다음업종에 한한다

중분류	업 종 별	비 고
10	식료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24-2호, 2024.1.1.)(변경) *부동산 임대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11	음료제조업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14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 제외	
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제1차 금속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2	가구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6811	*부동산 임대업	

단)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중 공해다발업종 폭발 위험성이 있는 제조업에 대하여는 제한 할 수 있다

○ 산집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 산집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 태양에너지 발전업

○ 산집법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2) 입주제한업종(변경)

○ 업종 대상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다음의 업종은 신규입주를 제한함(기존 공장을 양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제외)

입주제한업종	세부제한사항(변경)
악취를 배출시키는 업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변경)※ 단,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조 29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방위산업, 로봇산업 포함)에 한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환경 인·허가기관(부서)과의 협의 완료시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3) 입주자격(변경없음)

가) 익산제2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업종의 기업체 및 지원기관

단, 지원기관은 지원시설 설치계획에 의한 지원시설에 한하여 입주허용

나)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함

다) 산집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

4) 입주 우선 순위(변경없음)

○ 조성된 부지면적의 규모에 비하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입주공장을 선정한다

- 첨단산업분야의 업종
- 지역내 전후방 관련 효과가 큰 업종
-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수출기여도가 높은 업종
- 공해도가 적고 주변 유휴 노동력 이용이 가능한 업종

5) 사후 관리계획(변경없음)

○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익산제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6)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 선정 통보(변경없음)

○ 입주업체 선정은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정후 업체에 통보
(단, 지원기관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7) 입주선정에 따른 평가내용(변경없음)

가) 업종별성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나) 고용유발 효과

다) 국제수지 개선효과

라) 재무구조 건전상태

마) 공해유발상태

바) 종합판정

8) 입주 계약체결(변경없음)

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선정된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 (익산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안에 매매계약(계약금 10%이상 불입)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 규정으로 간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공장부지 분양면적 한도(변경없음)

○ 공장용지의 과다보유 확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상의 공장건축 면적에

의거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기준공장 면적율 적용

10)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가)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 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산업용지의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분할 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나)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다. 용지의 용도별구획 계획(변경)

1) 용도별 구획면적(변경)

(단위 : 천㎡)

총 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3,274 (100%)	2,565 (78.3)	70 (2.2)	605 (18.5)	34 (1.0)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없음)

가) 산업시설구역

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② 산집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관이 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부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의한 근린생활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①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② 산집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라. 업종별 공장 배치계획(변경)

1)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단위 : ㎡)

구 분		업종명	면적	비고
			2,565,035	100.0
C	10,11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73,060	2.8
	13,14,15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1,453	2.4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308,020	12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20,21,22	화학제품, 의약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17,672	20.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24	1차 금속 제조업	-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2,168	4.0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00,399	23.4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90,165	3.5
	28	전기장비 제조업	60,630	2.4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932	0.5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40,183	25
	31	기타 운송장비	-	-
	32,33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52,224	2.1
H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3,761	0.9
M	70	연구개발업	21,368	0.8

2) 기본방향 및 원칙(변경없음)

가)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관산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 도모

나) 토지이용, 교통, 단계별 사업등에 부합되고 택지별 교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종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

다) 업종의 배치와 택지의 분할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계열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택지분할의 합리화

3) 배치기준(변경없음)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업종별 공장배치

나) 익산제2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나항의 업종에 한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업종의 입주신청 면적이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

면적이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② 기존 입주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 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지원시설 설치계획(변경)

1) 지원시설계획의 기본방향 및 원칙(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지원시설이라 함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반 기능 즉 공공행정기능, 기업생산활동지원기능, 종업원후생복지기능 등을 말하며 이들 시설을 산업단지개발방향 및 주어진 조건에 적합 하도록 효율적으로 배치

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게 효율적이고 활력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산정

다) 산업단지내 근로자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근로환경에 적합한 후생 복지시설의 기준 및 위치 설정

2) 기능별 지원시설 현황(변경)

가) 기능별 지원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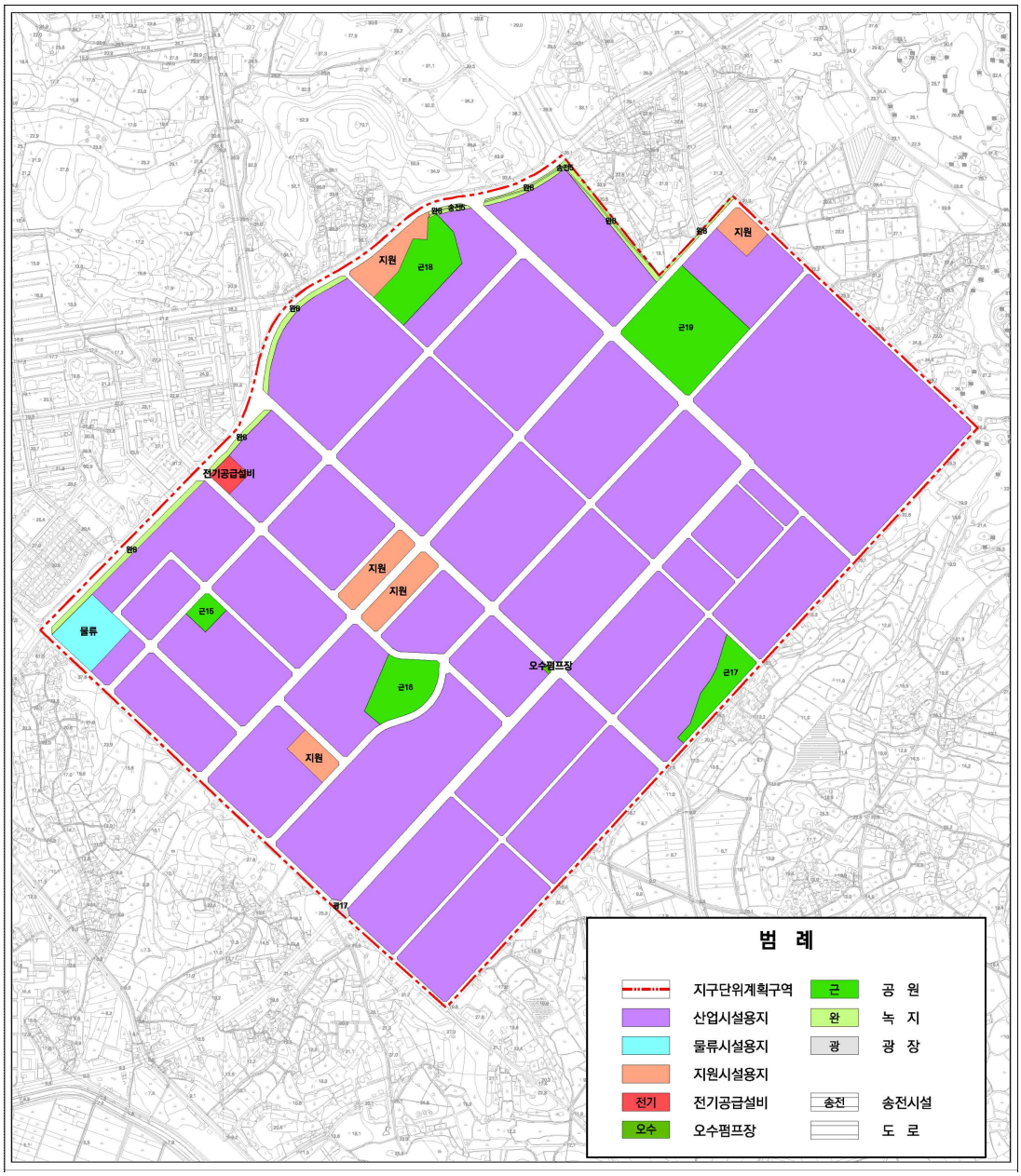
(단위 : ㎡)

유 형	지원시설기능	지원시설명	기관수	획지면적	비고
계	-	-	15	69,876	
공공 및 지원기관	공공행정기능	한 전	1	7,299	후생복지시설 부지 포함
		소 방 서	1	5,952	
	관리운영기능	한국교통안전공단	1	989	
		관리사무소	1	915	
	우정통신기능	전신전화국	1	701	
	연 구 기 능	실 증 산 업	1	768	
생산활동 지원시설	차량운수기능	주 유 소	1	4,524	
		화 물 수 송	1	3,300	
		자동차관련 시 설	3	9,454	
	공급처리기능	도 시 가 스	1	6,285	
		천 연 가 스	1	9,860	
		증 기	1	9,906	
		연료전지 발전시설	1	9,923	

바. 용도별 구획 평면도(변경없음) : 별표 #1

사.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없음) :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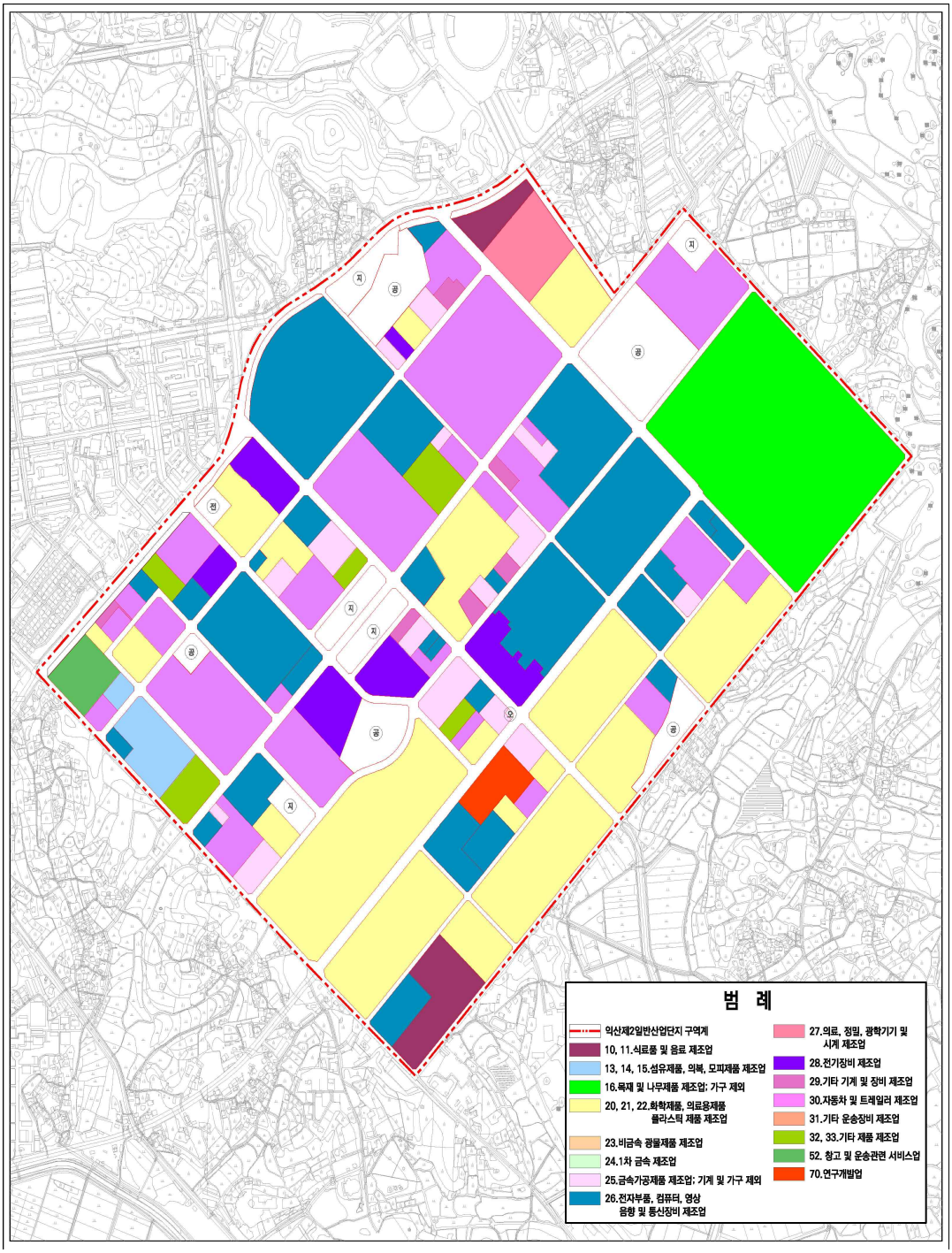
[별표 #1]용도별 구획 평면도(변경없음)



※ 산업시설 : 제조시설, 물류시설

※ 공공시설 :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전기공급설비, 오수펌프장

[별표 #2]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51호

국립정읍숲체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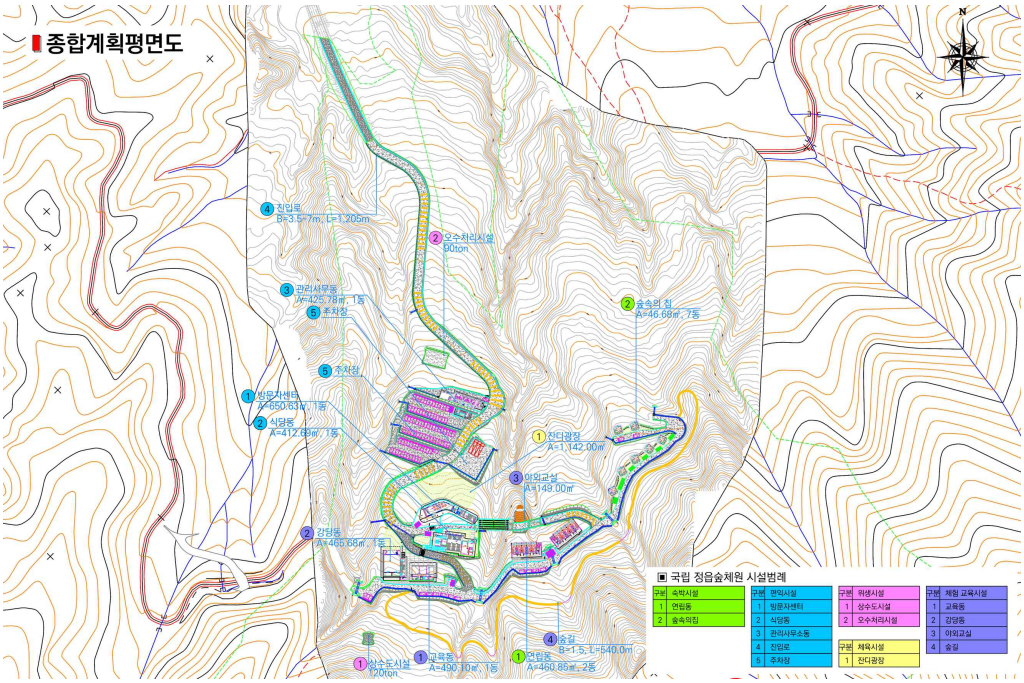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립정읍숲체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고시 사항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 명　　칭 : 국립정읍숲체원 자연휴양림
 - 위　　치 : 전북 정읍시 북면 복흥리 산226-1
 - 지정면적 : 319,000㎡(2026. 7. 15./산림청고시 제2026-68호)
 - 조성면적 : 26,446㎡ (산림형질변경면적)
 - 시 행 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시설물 배치도



3. 시설계획

시 설 물 명	단위	승인 신청내역			비 고
		규모	수량	형질변경면적(㎡)	
합 계				**26,446**	
가. 숙박시설				**1,512**	
연립동	동	A=460.85㎡	2	968	
숲속의 집	동	A=46.68㎡	7	544	
나. 편익시설				**20,552**	
방문자센터	동	A=650.63㎡	1	1,016	
식당동	식	A=412.69㎡	1	1,277	
관리사무동	식	A=425.78㎡	1	737	
진입로	식	B=3.5~7m, L=1,205m	1	13,134	
주차장	식	A=4,388.00㎡	1	4,388	
다. 위생시설			-	**526**	
상수시설	식	120ton	1	107	
오수처리시설	식	90㎥/일	1	324	
화장실	식	A=45.59㎡	1	95	
라. 체험·교육시설				**2,714**	
교육동	식	A=490.10㎡	1	808	
강당동	식	A=465.68㎡	1	948	
야외교실	식	A=149.00㎡	1	149	
숲길	식	B=1.5m, L=540m	1	809	
마. 체육시설				**1,142**	
잔디광장	식	A=1,142.00㎡	1	1,142	

4. 연도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 320억(국비)
- 연도별 투자금액 : '26년 74.79억, '27년 92억, '28년 100억, '29년 52.18억

5. 국립정읍숲체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일자 : 2026. 11. 10.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52호

봉서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립한 「소양천권역 (봉서천) 하천기본계획(2018. 3.,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부분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봉서천 지방하천
2. 하천의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운곡리 일원
3. 변경 사유 :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운곡리 일원의 소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봉서천 일부 구간의 하천공간 관리지구를 변경하고, 기수립 계획 이후 변화된 하천 현황을 반영하여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를 조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주요 변경 내용

가. 하천공간 관리지구 변경

구분	당초			변경		
	측점(No.)	면적(㎡)	관리지구	측점(No.)	면적(㎡)	지구
좌안	4+800~5+790	9,098	좌안5 일반보전지구	4+800~5+020	2,949	좌안12 근린친수지구
				5+020~5+790	6,149	좌안5 일반보전지구
우안	4+325~5+800	27,457	우안3 일반보전지구	4+325~4+800	8.324	우안3 일반보전지구
				4+800~5+020	11,930	우안8 근린친수지구
				5+020~5+800	7,203	우안9 일반보전지구

나. 계획홍수량 및 계획규모(변경없음)

다.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

- 현황측량에 따른 하천단면과 수리검토 결과를 반영한 변경계획은 다음과 같음.

측점	당초		변경	
	계획하폭(m)	계획홍수위(EL.m)	계획하폭(m)	계획홍수위(EL.m)
No.4+800	27.0	73.16	27.0	72.73
No.4+868	-	-	8.0	73.43
No.4+900	8	74.83	10.4	74.12
No.5+000	10	76.94	10.4	76.65
No.5+020	34	77.31	14.4	77.57

라. 하천시설물 정비계획

구분	위치 및 구간	정비계획	
		당초	변경
좌안 보축	No.4+868~No.5+020	계획 없음	보축(파라펫), L=152m
우안 보축	No.4+868~No.5+020	계획 없음	보축(파라펫), L=152m
무명교	No.4+800	계획 없음	기존 세월교를 단경간 교량으로 재가설

5. 관계도서 열람

관계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완주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53호

덕천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북특별자치도청(물통합관리과), 정읍시청(건설과), 부안군청(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덕천천 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변경)일 : 2026. 11. 13.
3. 지정(변경) 사유 : 지방하천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4. 하천 구간

하천명	하천 구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덕천천	6개 지구 (좌안 - 3개 지구, 우안 - 3개 지구)		19,600	578,410	
	전북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1309-4 (No.4+600)	전북 부안군 백산면 대수리 928-8 (No.0+000)	4.600	158,921	정비사업 완료
	전북 정읍시 덕천면 상학리 888 (No.9+237)	전북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1309-4 (No.4+600)	4.637	153,692	누락반영 (증63㎡)
	전북 정읍시 덕천면 상학리 979 (No.9+800)	전북 정읍시 덕천면 상학리 888 (No.9+237)	0.563	8,094	변경없음
	좌안부 소계		9.800	320,707	3개 지구
	전북 정읍시 이평면 평령리 1339-3 (No.4+600)	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757-10 (No.0+000)	4.600	189,932	정비사업 완료
	전북 정읍시 덕천면 상학리 982 (No.9+554)	전북 정읍시 이평면 평령리 1339-3 (No.4+600)	4.954	67,265	누락반영 (증40㎡)
	전북 정읍시 덕천면 상학리 980 (No.9+800)	전북 정읍시 덕천면 상학리 982 (No.9+554)	0.246	506	변경없음
	우안부 소계		9.800	257,703	3개 지구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54호

원당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원당천 하천기본계획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수립목적

원당천 하류부 복개구간 정비계획을 현실적인 교통여건과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하고, 치수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와 교통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원당천 하천기본계획을 부분변경하고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금회수립 대상범위

수계명	하천명	하천등급	하천의구간		연장(㎞)	비고
			기점	종점		
만경강	원당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88번지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1030-1번지선 전주천(지방) 합류점	1.60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0호 (2024.02.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88번지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1030-1번지선 전주천(지방) 합류점	1.60	변경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하천명	유역면적 (㎢)	수자원 총량 (백만㎥)	기준 갈수량 (㎥/s)	저수량 (㎥/s)	유출량(백만㎥)			손실량 (백만㎥)
					홍수기	평상시	수자원 부존량	
원당천	2.02	2.643	0.0059	0.0236	1.082	0.440	1.522	1.121

4. 정비계획

하천명	하천연장 (㎞)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				비 고
		수립	미수립	합계	완료 구간	필요 구간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원당천	1.60	1.60	-	3.20	-	2.30	0.90	

주) 하천정비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 면적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s)
					하도분담	유역분담	
원당천	원당천 종점 (No.0)	2.02	80	46	46	-	-
	참조은아파트지점 (No.0+550)	1.55	80	36	36	-	-
	원당10낙차공 지점 (No.1+221)	0.71	80	17	17	-	-
	원당천 시점 (No.1+600)	0.55	80	13	13	-	-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 획 홍수량 (㎥/s)	계획 홍수위 (EL.m)		계획 규모 (년)	하폭 (m)		기설제방고 (EL.m)		비 고
				당초	변경		현재	계획	좌안	우안	
원당천	0+000	0	46	52.31	52.31	80	10	29	53.64	52.35	
	0+050	50	46	52.40	52.40	80	12	16	53.96	53.74	
	0+055	55	46	52.94	52.76	80	8	12	54.08	54.08	춘향로교(복개)
	0+100	100	46	52.94	52.76	80	7	12	54.05	53.95	복개
	0+150	150	46	53.27	53.25	80	7	12	54.60	54.60	복개
	0+178	178	46	53.84	53.88	80	7	12	55.08	55.08	원당1교(복개)
	0+190	190	46	54.02	54.02	80	7	16	55.51	55.51	복개시점
	0+200	200	46	54.17	54.18	80	7	16	55.66	55.66	
	0+225	225	46	55.63	55.63	80	7	7	56.25	56.25	원당1무명교(철거)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하천명	구간(No.)	좌·우안 구분	지구구분	연장(m)	비고
원당천	0+000 ~ 1+600	좌 안	복원지구	1,600	
	0+000 ~ 1+600	우 안	복원지구	1,600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 서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물통합관리과, 전주시청 하천관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55호

원당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북특별자치도청(물통합관리과), 전주시청(하천관리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원당천 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변경)일 : 2026. 11. 13.
3. 지정(변경) 사유 : 지방하천 정비사업 경계측량 등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4. 하천 구간

하천명	하천 구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원당천	원당천 2개 지구(좌안 - 1개 지구, 우안 - 1개 지구)		3.200	28,550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88번지선(No.1+600)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1042-8번지선(No.0+000)	1.600	14,472	지방하천 정비사업
	좌안부 소계		1.600	14,472	1지구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82-4번지선(No.1+600)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1030-80번지선(No.0+000)	1.600	14,078	지방하천 정비사업
	우안부 소계		1.600	14,078	1지구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829호

공인 등록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공 고 사 항

1. 공인 등록 사유 : 조직 신설에 따른 회계업무 추진
2. 공인 등록일 : 2026년 11월 13일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등 록 공 인		
공 인 명		인 영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전북특별자치도공공기관이전추진단 일상경비출납원인	
	전북특별자치도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분임징수관인	
	전북특별자치도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분임물품출납원인	
	전북특별자치도공공기관이전추진단 수입금출납원인	

※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과 기록관리팀 김지성(280-427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835호

도로공사 시행(변경)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변경)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무정~산내 (지방도 729호선)
도로공사의 종류	지방도 확포장 L=1.88km B=23.0m		
도로공사 구간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148-5번지 ~ 백산리 962번지(지방도 729호선)		
도로공사 시행장소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148-5번지 ~ 백산리 962번지(지방도 729호선)		
도로공사 착공일	2018.04.27.	도로공사 준공 예정일	(당초)2026.12.31. (변경)2027.12.31.
도로공사(변경) 목적 및 사유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을 통한 전통사업 발전과 관광객유치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지역경제활성화 * (변경내용) 사유지(37필지, 7,283.63㎡) 확보를 위한 수용재결 절차 이행을 위해 공사기간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840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전북문화산책)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허가번호 : 제2026-37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전북문화산책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69, 5층
4. 대 표 자 : 김윤상
5. 허가연월일 : 2026년 11월 10일
6. 설립목적
   -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진흥과 대중화,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과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841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재단법인 이철량미술문화재단)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허가번호 : 제2026-38호
2. 법 인 명 : 재단법인 이철량미술문화재단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신뱅이길 57
4. 대 표 자 : 이철량
5. 허가연월일 : 2026년 11월 10일
6. 설립목적
   - 전북지역 미술문화 진흥과 도민의 예술향유 기회확대등을 위해 전시, 연구, 청년 작가 발굴 및 육성하여 전북 미술 발전과 삶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843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공고사항**

1. 허가번호 : 제2026 - 39호
2. 허 가 일 : 2026년 11월 10일
3. 허가구분 : 신 규
4. 법인명칭 : 재단법인 농어촌활력재단
5.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6. 대 표 자 : 고 정 삼
7. 사업내용

가.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조사·분석, 연구 및 사업 추진
나. 농어촌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연계·용역사업 추진
다. 농어촌 활성화 사업 관련 통계 및 데이터 구축, 모니터링, 사후관리 추진
라. 농어촌 주민, 마을리더, 관광·체험서비스 제공 주체, 농가 등의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추진
마.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유치·정착 지원사업 추진
바. 농어촌 재생, 농촌 협약, 공간 재구조화 정책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
사. 농어촌지역 유휴시설 실태조사 및 DB 구축, 활용방안 마련 추진
아.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판로 개척 등 추진
자. 농어촌 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상담 및 교류·협력 등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844호

비영리사단법인 대표자 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건강장수공공스포츠클럽
2. 대표자 : 서병선
3. 주된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체육공원길 58
4. 주된 사업
   ○ 소속 회원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 등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시행
   ○ 연간계획에 따른 자체 스포츠경기대회 개최
   ○ 타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 참가에 관련된 사업
   ○ 지역사회의 청소년 및 성인의 체육활동 보급과 관련된 사업
   ○ 회원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우수선수 발굴·양성과 관련된 사업
   ○ 엘리트 자원 확보를 위한 선수반 운영
   ○ 기타 스포츠클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변경연월일 : 2026. 11. 10.
6. 변경구분
   ○ 정관 변경(제2조 소재지)
   ○ 소재지 변경
      - (당초)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체육공원길 58
      -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시장통길 19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846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26-1-전북특별자치도-12호
2. 단체의 명칭 : 완주고향사랑군민회
3. 대표자 : 김 경 회
4. 주된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880
5. 주요 사업
   ○ 완주군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개선을 위한 사업
   ○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 완주군 문화홍보 및 고향특산물 홍보 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26. 11. 11.

군산시 고시 제2026-16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3번지 외 3필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회현면사무소)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군산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3번지 외 3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회현면사무소)사업
   나. 명 칭 : 회현면 너나들이센터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부지 9,096㎡, 주2동부1동/지상1~지상2층, 일반건축물, 건축면적 1,136.92㎡, 연면적 1,823.08㎡, 건폐율 12.4990%(40%이하), 용적률 20.0430%(100%이하)
   - (금회) 공공청사, 철근콘크리트조, 주2동/지상1층 연면적 84.73㎡ 증축, 부2동/지상1층 연면적 79.53㎡ 증축, 너나들이광장, 놀이마당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시장(농업정책과장)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기타사항
1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1-5	대	5,611	5,611	군산시					
2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2	대	300	300	군산시					
3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2-1	대	540	540	군산시					
4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3	대	2,645	2,645	군산시					
합계		4필지		9,096	9,096						

군산시 공고 제2026-250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6-124호(2026.8.28.)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비응도동 3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군산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비응도동 36-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나. 명 칭 : 에스지씨그린파워 창고동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부지면적 : 54,575.0㎡
   나. 건축계획(전체)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사업내용
54,575.0	주9동/ 지하1~지상3층	12,433.7 * 건폐율 22.78%	8,897.44 * 용적률 15.87%	금회 창고동 증축

   - (금회) 주9동/2층 발전시설 연면적 850.5㎡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에스지씨그린파워 주식회사 대표 박준영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외항로 1331(비응도동)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6. 8. 28. ~ 2027. 6. 30.(준공 2026. 10. 22.)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기타사항
군산시 비응도동	36-23	잡	54,575.0	1,050.0	에스지씨 그린파워 주식회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외항로 1331(비응도동)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근저당	
	1필지		54,575	1,050						

정읍시 고시 제2026-1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정읍시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총연장 (㎞)
기정	군도	4호선	관청~주산선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7,139	고부면 관청리 835-6	고부면 관청리 596-5	-	0.502
변경	군도	4호선	관청~주산선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7,367	고부면 신흥리 787	고부면 관청리 596-5	-	0.982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부천 게보갑문교 재가설공사 추진을 위해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공사완료시까지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마. 사업시행자 : 정읍시청(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바. 도로관리청 : 정읍시청(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사.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6. 11. 13. ~ 11. 28.(15일간)

○ 열람장소 : 정읍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건설과(☎063-539-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사항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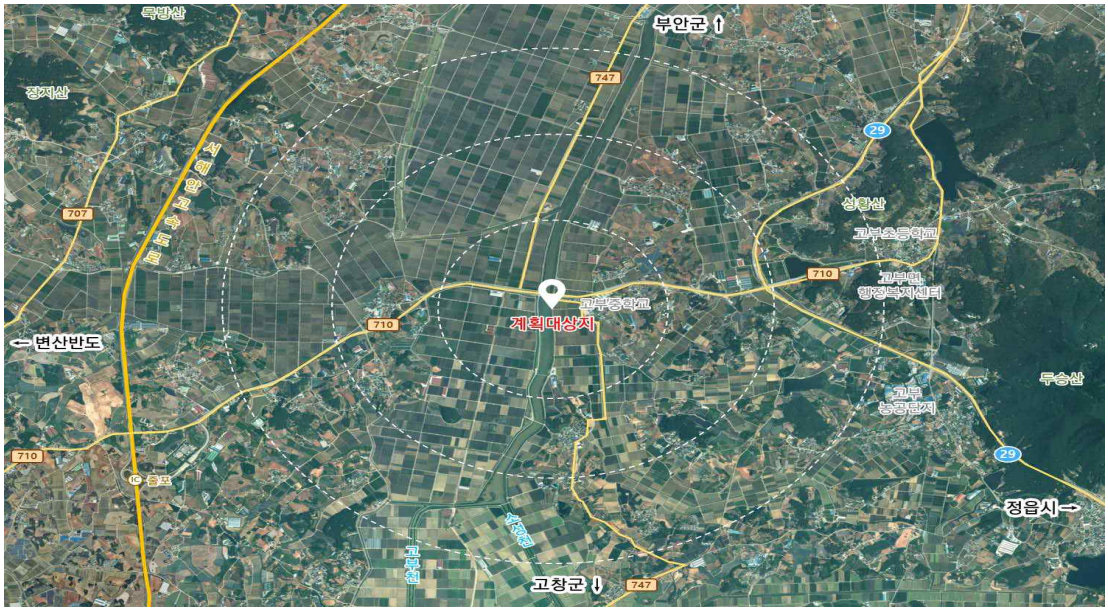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22	19~30	집산 도로	314	고부면 관청리 1091	고부면 신흥리 2-22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소로	3	152	4~8	집산 도로	139	고부면 신흥리 2-11	고부면 신흥리 781-2	일반 도로	-	금회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1-22	• 신설 - 폭원 : 19m~30m / 연장 : 314m	• 계보갑문교 재가설 공사 추진을 위한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
-	소로 3-152	• 신설 - 폭원 : 4m~8m / 연장 : 139m	• 계보갑문교 재가설 공사 추진을 위한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

3. 지형도면 : 실음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람 가능

【 붙임1 】 도로구역 위치도


부안군
747
29
707
710
710
710
747
29
계획대상지
고부중학교
고부초등학교
고부면
행정복지센터
고부
농공단지
상왕산
두승산
변산반도
줄포
정읍시
고창군
고부천
새만금고속도로

【 붙임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구분	주소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5,781	7,139	증) 10,228	17,367			
1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971	도로	23,258	8	증) 611	619	국(건설교통부)		
2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222	구거	14,385	1,311	증) 1,139	2,450	국(농림수산부)		
3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223	도로	11,816	18	증) 494	512	국(농림수산부)		
4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110-1	답	80	80	-	80	정읍시		
5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111-1	답	125	125	-	125	정읍시		
6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112-1	답	540	540	-	540	정읍시		
7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89-10	도로	7	7	-	7	노성화	정읍군 고부면 관청리 33	
8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89-11	도로	106	106	-	106	정읍시		
9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89-17	답	216	216	-	216	정읍시		
-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89-4	도로	-	30	감) 30	-	-		589-6번지로 합병
-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89-5	도로	-	9	감) 9	-	-		589-6번지로 합병
10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89-14	도로	13	13	-	13	김정묘 외 2인		
11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89-18	도로	101	101	-	101	정읍시		
12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89-6	도로	44	7	증) 37	44	정읍시		
13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89-7	도로	40	40	-	40	정읍시		
14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89-8	도로	23	23	-	23	정읍시		
15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89-9	도로	96	96	-	96	오준택		
16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91-2	도로	99	99	-	99	정읍시		
17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91-4	도로	26	26	-	26	전라북도(교육감)		
18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91-6	도로	46	46	-	46	정읍시		
19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91-7	도로	30	30	-	30	정읍시		
20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91-8	도로	83	83	-	83	전라북도(교육감)		
21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91-9	도로	251	251	-	251	정읍시		
22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94-1	도로	198	195	-	195	임승갑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573	
23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94-3	도로	66	50	-	50	정읍시		
24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95-3	도로	198	198	-	198	국(건설교통부)		
25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95-4	도로	139	139	-	139	국(건설교통부)		
26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95-5	전	300	300	-	300	박양구	정읍시 고부면 관청2길 30	
27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96-2	도로	13	12	-	12	국(건설교통부)		
28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96-3	도로	10	8	-	8	정읍시		
29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96-5	답	94	94	-	94	정읍시		
30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602-1	전	436	4	-	4	밀양박씨공평종중	정읍시 공평동 227	
31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602-18	전	5	5	-	5	김용태	정읍군 고부면 관청리 501	
32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01-1	도로	33	33	-	33	김용태	정읍군 고부면 관청리 501	
33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01-5	도로	60	60	-	60	정읍시		
34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04-5	도로	3	3	-	3	전라북도(교육감)		
35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04-6	도로	33	33	-	33	정읍시		
36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04-7	도로	179	179	-	179	정읍시		
37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04-9	학교	162	162	-	162	전라북도(교육감)		
38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16-7	도로	40	40	-	40	이기호	정읍군 고부면 만화리 428	
39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16-8	도로	56	56	-	56	이기호	정읍군 고부면 만화리 428	
40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17-8	도로	63	63	-	63	장수복	정읍군 고부면 관청리 838	
41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18-7	도로	122	122	-	122	노성엽	정읍군 고부면 관청리 570-4	
42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19-9	도로	99	99	-	99	노성엽	정읍군 고부면 관청리 570-4	

구분	주소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5,781	7,139	증) 10,228	17,367			
43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20-5	도로	116	116	-	116	전라북도(교육감)		
44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20-8	학교	376	376	-	376	전라북도(교육감)		
45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20-9	학교	89	89	-	89	전라북도(교육감)		
46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21-3	도로	26	26	-	26	국(농림수산부)		
47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21-5	대	9	9	-	9	정읍시		
48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21-6	대	33	33	-	33	국(재정경제원)		
49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25-6	도로	410	410	-	410	전라북도(교육감)		
50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25-8	학교	9	9	-	9	전라북도(교육감)		
51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25-9	학교	74	74	-	74	전라북도(교육감)		
52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35-10	도로	2	2	-	2	전라북도		
53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35-13	도로	32	32	-	32	전라북도		
54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35-18	도로	29	29	-	29	전라북도		
55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35-6	도로	50	50	-	50	이재만	정읍군 고부면 관청리 485	
56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35-7	전	22	22	-	22	정읍시		
57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971-14	도로	54	54	-	54	국(건설부)		
58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971-2	도로	99	99	-	99	국(건설부)		
59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971-3	도로	8,147	487	-	487	국(건설교통부)		
60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971-44	학교	11	11	-	11	국(교육부)		
61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971-45	학교	7	7	-	7	국(교육부)		
62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971-46	학교	52	52	-	52	국(교육부)		
63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971-47	학교	11	11	-	11	국(교육부)		
64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979-38	하천	21	21	-	21	국(교육부)		
65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12-1	하천	3,634	-	증) 405	40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6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12-4	제방	2,393	-	증) 260	26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7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31-4	하천	1,594	-	증) 661	661	김기정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75	
68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47-9	도로	9	-	증) 7	1	전라북도		
69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47-10	도로	29	-	증) 23	23	전라북도		
70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49-3	구거	145	-	증) 126	12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1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49-5	제방	364	-	증) 248	248	전라북도		
72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49-8	도로	627	-	증) 10	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3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49-9	도로	1,249	-	증) 94	94	전라북도		
74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851-6	도로	4	-	증) 4	4	전라북도		
75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979-43	하천	23,840	-	증) 234	234	환경부		
76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085-1	답	652	-	증) 652	65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7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085-3	답	6	-	증) 6	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8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085-4	답	54	-	증) 54	5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9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086-2	답	424	-	증) 424	424	김영문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538-1	
80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087-2	답	742	-	증) 742	742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81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088-1	답	992	-	증) 992	992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82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089	답	366	-	증) 366	366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83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090	답	84	-	증) 84	84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84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091	답	340	-	증) 340	340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85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092	답	2,777	-	증) 3	3	이을섭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1길22 104동704호 (시기동, 센트럴하이타운)	
86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	2-11	제방	599	-	증) 126	12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7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	2-22	제방	1,292	-	증) 1,072	1,072	국(건설교통부)		
88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	2-23	하천	14,464	-	증) 676	676	국(건설교통부)		
89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	781	하천	62,719	-	증) 234	234	국(건설부)		

구분	주소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5,781	7,139	증) 10,228	17,367			
90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	781-2	제방	237	-	증) 64	64	국(건설부)		
91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	1244	구거	68,527	-	증) 85	85	국(농림수산부)		

남원시 공고 제2026-2466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3일
남원시장

1.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350,589	-	350,589	100.0	
계획관리지역	345,713	-	345,713	98.6	
생산관리지역	4,876	-	4,876	1.4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9	기정	지리산 웰빙허브 산업특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복합형	소계	-	350,589	-	350,589	
				주거형	운봉읍 용산리 717-4번지 일원	56,170	-	56,170	
	변경	지리산 허브밸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특정형	운봉읍 용산리 717-8번지 일원	41,112	-	41,112	
				관광휴양형	운봉읍 용산리 266-14번지 일원	253,307	-	253,307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9	• 구역명칭변경 -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리산웰빙허브지구단위계획구역	•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가 지정 해제(25.11.26) 됨에 따라 '웰빙허브산업특구'의 명칭을 삭제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세부 조서 : 변경

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실음생략)

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도로

① 도로시설 총괄표

(단위 : 노선, m, ㎡)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13	3,495	31,274	2	153	1,645	3	386	6,061	8	2,956	23,568
중로	7	1,248	16,815	-	-	-	3	386	6,061	4	862	10,754
소로	6	2,247	14,459	2	153	1,645	-	-	-	4	2,094	12,814
변경	14	3,439	28,781	1	81	813	3	386	6,061	10	2,972	21,907
중로	7	1,303	15,515	-	-	-	3	386	6,061	4	917	9,454
소로	7	2,136	13,266	1	81	813	-	-	-	6	2,055	12,453

② 도로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341	15	국지도로	157	중로2-105 용산리 771-1도	소로3-605 용산리 377-5도	일반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07.01.05.	
기정	중로	2	342	18	국지도로	98	중로3-343 용산리 265-1	중로3-341 용산리 265-1	일반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07.01.05.	
기정	중로	2	105	15	보조간선도로	1,164 (131)	중로2-101 동천리 419-3	허브밸리입구 용산리 771-1	일반도로	운봉초교	'77.12.30.	
기정	중로	3	341	12	국지도로	82	중로3-342 용산리 718-1도	중로2-342 용산리 265-1도	일반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07.01.05.	
기정	중로	3	342	12	국지도로	323	중로2-341 용산리 682-3구	중로3-344 용산리 265-1도	일반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07.01.05.	
변경	중로	3	342	12	국지도로	682	중로2-341 용산리 682-3구	중로3-512 용산리 446-22도	일반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07.01.05.	
기정	중로	3	343	12	국지도로	115	중로2-341 용산리 265-1도	중로2-342 용산리 265-1도	일반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07.01.05.	
기정	중로	3	344	12	국지도로	342	중로3-341 용산리 265-1도	용산리 446-1목	일반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07.01.05.	
변경	중로	3	344	12	국지도로	38	중로3-341 용산리 265-1도	주차장341 용산리 423-8차	일반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07.01.05.	
기정	소로	1	601	10	특수도로	81	중로3-342 용산리 265-1도	중로2-342 용산리 265-1도	보행자전용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07.01.05.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폐지	소로	1	602	10	국지도로	72	중로3-344 용산리 265-1도	소로3-605 용산리 265-1도	일반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13.12.24.	
기정	소로	3	605	6	국지도로	1,628	중로3-341 용산리 265-1도	중로2-341 용산리 265-1도	일반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13.12.24.	
변경	소로	3	605	6	국지도로	1,387	용산리 442-3목	중로2-341 용산리 265-1도	일반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13.12.24.	
기정	소로	3	606	6	국지도로	187	소로3-605 용산리 산8임	구역경계 용산리 산10임	일반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13.12.24.	
기정	소로	3	607	4	특수도로	156	소로3-605 용산리 442-3목	소로3-605 용산리 442-4임	보행자전용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13.12.24.	
기정	소로	3	608	4	특수도로	123	소로3-605 용산리 442-3목	소로3-605 용산리 442-4임	보행자전용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13.12.24.	
신설	소로	3	611	6	특수도로	196	중로3-344 용산리 266-13대	용산리 446-3대	일반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금회	
신설	소로	3	612	5	특수도로	6	용산리 446-3목	소로3-611 용산리 446-2목	일반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금회	

③ 도로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342	중로3-342	• 변경 - 연장 : 323m → 682m, 증)359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노선 통폐합
중로3-344	중로3-344	• 변경 - 연장 : 342m → 38m, 감)304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노선 통폐합
소로1-602	-	• 노선폐지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노선 통폐합
소로3-605	소로3-605	• 변경 - 연장 : 1,628m → 1,387m, 감)241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노선 통폐합
-	소로3-611	• 신설 - 폭원 : 6m, 연장 : 196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노선 신설
-	소로3-612	• 신설 - 폭원 : 5m, 연장 : 6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노선 신설

▌주차장

①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32,562	증) 1,447	34,009		
변경	341	주차장	운봉읍 용산리 718답 일원	3,034	증)1,447	4,481	2007.01.05.	
기정	342	주차장	운봉읍 용산리 266-1차 일원	4,053	-	4,053	2007.01.05.	
기정	343	주차장	운봉읍 용산리 268-6차 일원	10,263	-	10,263	2007.01.05.	
기정	344	주차장	운봉읍 용산리 724-4차 일원	15,212	-	15,212	2007.01.05.	

②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41	주차장	• 면적변경 - 면적 : 3,034㎡ → 4,481㎡, 증)1,447㎡	• 주변도로 노선계획 변경에 따라 주차장 면적 조정

나) 공간시설 : 변경

▌녹지

①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소계					14,690	감) 1,179	13,511		
기정	341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17-5 일원	692	-	692	'07.01.05.	
기정	346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58 일원	1,020	-	1,020	'07.01.05.	
기정	347	녹지	경관녹지	운봉읍 용산리 758 일원	3,858	-	3,858	'09.07.14.	
변경	348	녹지	경관녹지	운봉읍 용산리 758 일원	2,294	감) 1,179	1,115	'09.07.14.	
기정	349	녹지	경관녹지	운봉읍 용산리 산6-2 일원	4,361	-	4,361	'09.07.14.	
기정	353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271-2 일원	1,807	-	1,807	'13.12.24.	
기정	354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268-6 일원	658	-	658	'13.12.24.	

②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348	녹지	경관녹지	• 면적변경 - 시설면적 : 2,294㎡→1,115㎡ 감) 1,179㎡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녹지 축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 위치	획지 면적(㎡) 기정	획지 면적(㎡) 변경	획지 면적(㎡) 변경후	비고
계			174,781	증) 2,553	177,334	
A	소계		37,822	증) 4,788	42,610	
	A-1	용산리 266-14	14,109	감) 10	14,099	허브복합토피아관
	A-2	용산리 268-12	16,749	-	16,749	아로마테라피관
	A-3	용산리 446-3	4,437	-	4,437	관리동
	A-4	용산리 423-10	1,613	증) 5,712	7,325	미니동물원→ 사계절축제장(변경)

	A-5	용산리 423-10	914	감) 914	-	라이더관리소(폐지)
D	소계		81,962	감)2,649	79,313	
	D-1	용산리 446-20	3,366	감) 2,826	540	녹지
	D-2	용산리 393	1,273	증) 252	1,525	녹지
	D-3	용산리 423-1	1,533	-	1,533	녹지
	D-4	용산리 266-2	3,752	-	3,752	녹지
	D-5	용산리 442-4	25,237	감) 75	25,162	녹지(토피어리원)
	D-6	용산리 442-3	13,987	-	13,987	녹지(미로원)
	D-7	용산리 442-3	12,145	-	12,145	녹지(향기원)
	D-8	용산리 산10	18,200	-	18,200	녹지(철쭉원)
	D-12	용산리 772	2,469	-	2,469	녹지
E	소계		1,003	증) 24	1,027	
	E-1	용산리 266-13	641	증) 24	665	화장실1
	E-2	용산리 442-6	362	-	362	화장실2
F	소계		7,209	-	7,209	
	F-3	용산리 724-1	7,209	-	7,209	허브체험장2
G	소계		46,785	증) 390	47,175	
	G-1	용산리 442	11,083	증)233	11,316	중앙광장
	G-2	용산리 산6-2	3,286	증)157	3,443	허브체험장1
	G-3	용산리 442-3	2,705	-	2,705	야외공연장1
	G-4	용산리 442-3	3,949	-	3,949	야영장
	G-5	용산리 442-5	1,800	-	1,800	풍속문화전시관
	G-6	용산리 442-3	498	-	498	전망대
	G-7	용산리 442-4	23,464	-	23,464	에코어드벤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1	· 면적변경 - 14,109㎡ → 14,099㎡ (감 10㎡)	· 주변도로계획 변경으로 부지면적 축소
A-4	· 용도변경 - 미니동물원 → 사계절축제장 · 면적변경 - 1,613㎡ → 7,325㎡ (증 5,712㎡)	· 현 개설현황을 반영하여 사계절축제장으로 용도변경
A-5	· 용도폐지 - 라이더관리소 폐지	· 사계절축제장 설치에 따른 개발계획 반영
D-1	· 면적변경 · 3,366㎡ → 540㎡ (감 2,826㎡)	· 사계절축제장 설치에 따른 개발계획 반영
D-2	· 면적변경 · 1,273㎡ → 1,525㎡ (증 252㎡)	· 주변 도로계획 변경으로 부지면적 증가
D-5	· 면적변경	· 주변 도로계획 변경으로 부지면적 축소

	· 25,237㎡ → 25,162㎡ (감 75㎡)	
E-1	· 면적변경 · 641㎡ → 665㎡ (증 24㎡)	· 사계절축제장 설치에 따른 개발계획 반영
G-1	· 면적변경 · 11,083㎡ → 11,316㎡ (증 233㎡)	· 주변 도로계획 변경으로 부지면적 변경
G-2	· 면적변경 · 3,286㎡ → 3,443㎡ (증 157㎡)	· 주변 도로계획 변경으로 부지면적 변경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허브복합토피아관 (변경없음)	용산리 266-14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나목, 라목, 마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A-2 아로마테라피관 (변경없음)	용산리 266-12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라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목, 카목, 타목 중 안마시술소, 파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라목(펜션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지상 4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3 관리동 (변경 없음)	용산리 446-3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기정 A-4 미니동물원	용산리 423-10	용도	허용	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다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변경 A-4 사계절 축제장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5 라이더 관리소 (폐지)	용산리 423-10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E-1 화장실1 (변경 없음)	용산리 266-13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E-2 화장실2 (변경 없음)	용산리 442-6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F-3 허브 체험장2 (변경 없음)	용산리 724-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바목, 사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G-1 중앙 광장 (변경 없음)	용산리 442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G-2 허브 체험장1 (변경 없음)	용산리 산6-2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바목, 사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G-3 야외 공연장1 (변경 없음)	용산리 442-3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G-4 야영장 (변경 없음)	용산리 442-3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라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G-5 풍속 문화 전시관 (변경 없음)	용산리 442-5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G-6 전망대 (변경 없음)	용산리 442-3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G-7 에코 어드 벤처 (변경 없음)	용산리 442-4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4	· 명칭 변경 - 미니동물원 → 사계절축제장 · 허용용도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다목 (신규)	· 지역축제 장소로 사용해오던 공간을 반영하여 영구적 용도변경
A-5	· 용도 폐지 - 라이더관리소 폐지	· 사계절축제장 설치에 따른 개발계획 반영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의 수량은 1업소당 2개 이하의 간판 설치를 원칙

○ 가로형 간판중 가로폭의 80%이내, 최대 10m 이내로 설치하되 판류형은 제한하고, 양질의 자재로 마감한 입체형 간판을 권장

○ 돌출형 간판은 2층이상부터 설치하고,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8m이내, 세로 크기는 1.0m 이내로 표시

○ 창문이용 광고물은 1층에 한하여 접착성이 있는 비닐 또는 접착시트를 활용한 띠형태로 한정하고, 전광류의 사용은 제한

다.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도로

① 도로시설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4	1,241	9,293	-	-	-	3	968	7,739	1	273	1,554
소로	4	1,241	9,293	-	-	-	3	968	7,739	1	273	1,554

② 도로시설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위 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601	8~10 (8)	국지도로	660	중로3-344 용산리742-6	중로3-344 용산리742-2	일반도로	-	2007. 1. 5.	
기정	소로	2	602	8	국지도로	164	중로3-342 용산리756-2	소로2-601 용산리756-2	보행자전용	-	2007. 1. 5.	
기정	소로	2	603	8	특수도로	144	중로3-342 용산리265-1	소로2-601 용산리761-3	보행자전용	-	2007. 1. 5.	
기정	소로	3	603	6	특수도로	273	중로3-344 용산리742-4	소로2-601 용산리721-10	보행자전용	-	2007. 1. 5.	

※ ( )안의 수치는 구역 내 포함되는 폭원 임

나) 공간시설

▌녹지

① 녹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3,047	-	3,047		
기정	342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42-3공 일원	571	-	571	2007.01.05.	
기정	343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42-5공 일원	554	-	554	2007.01.05.	
기정	344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42-7공 일원	906	-	906	2007.01.05.	
기정	345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58-2공 일원	1,016	-	1,016	2007.01.05.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8,772	-	28,772	
B	B-1	B-1	용산리 714-15장	3,166	-	3,166	
	B-2	B-2	용산리 714-10장	2,329	-	2,329	
	B-3	B-3	용산리 714-22답	1,387	-	1,387	
	B-4	B-4	용산리 717-29장	4,647	-	4,647	
	B-5	B-5	용산리 717-8장	4,565	-	4,565	
	B-6	B-6	용산리 717-11장	4,164	-	4,164	
	B-7	B-7	용산리 721-7장	4,330	-	4,330	
	B-8	B-8	용산리 721-8장	4,184	-	4,184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1 ~ B-8 허브제품 가공단지	용산리 일원	용도	허용	기정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나목, 다목 중 목욕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목 중 일반숙박시설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나목, 다목 중 목욕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목 중 일반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신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기정	· 지상 2층
				변경	· 지상 4층

1. 허브제품생산 및 가공공장으로 한정
2. 허브생산·가공제품 중 한국표준분류표 2433의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제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공장은 허용
3. 부대시설 : 제품전시장 및 판매장, 원재료 등을 활용한 체험시설 등

※ 목욕장 : 허브원재료 및 생산품을 활용한 족욕카페, 체험스파 및 반신욕장 등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로 한정(폐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B-1 ~ B-8	· 허용용도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일반음식점 신설	· 상업기능을 강화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연면적 제한 사항 폐지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로 한정	· 상업기능 강화를 위해 근생시설 면적제한 사항 폐지
	· 높이 제한 변경 - 지상 2층 → 지상 4층	· 상업기능 및 토지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열람기간(장소) 및 주민의견 제출처

○ 열람기간 : 2026. 11. 13. ~ 2026. 11. 27.(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및 주민의견서 제출처 : 남원시청 3층 도시과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도서 : “실음생략”

※ 관련도서는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6-2467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결정(안)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3일
남원시장

1.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지역문화 활동시설	문화시설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839-1번지 일원	-	증)8,310	8,310	금회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결정 사유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문화시설	• 문화시설 신설 - 면적 : 8,310㎡	○ 지역주민의 님비(NIMBY)현상 극복 및 에너지 문제 해소를 도모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문화활동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결정하고자 함

3)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40% 이하	100% 이하	-

2. 열람기간(장소) 및 주민의견 제출처

○ 열람기간 : 2026. 11. 13. ~ 2026. 11. 27.(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및 주민의견서 제출처 : 남원시청 3층 도시과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도서 : “실음생략”

※ 관련도서는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고시 제2026-161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35호(2026.10.30.)의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승인 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김제시장

1.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45,023,733	-	545,023,733	100.00	
도 시 지 역		44,158,904	-	44,158,904	8.10	
비 도 시 지 역		500,864,829	-	500,864,829	91.90	
관리지역	소 계	232,950,951	증) 4,000	232,954,951	42.74	
	보 전 관 리 지 역	76,490,463	-	76,490,463	14.03	
	생 산 관 리 지 역	71,744,862	-	71,744,862	13.16	
	계 획 관 리 지 역	84,715,626	증) 4,000	84,719,626	15.54	
농 림 지 역		239,693,878	감) 4,000	239,689,878	43.98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28,220,000	-	28,220,000	5.18	

※ 기정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36호(2025.8.22.) 적용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내용
		기정	변경			
-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20-17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000	100% 이하	·부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인 볏-고을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④	공공청사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20-12 일원	-	증)1,129	1,129	금회신청	

(2)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④	공공청사	· 시설면적 - 1,129㎡(신설) (증 1,129㎡)	· 기 조성된 부량보건지소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3)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문화시설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20-17 일원	-	증)2,871	2,871	금회신청	

(4)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문화시설	· 시설면적 - 2,871㎡(신설) (증 2,871㎡)	·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인 볏-고을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결정하고자 함.

2.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관계도서 : 실음생략(열람장소 비치)

김제시 고시 제2026-165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74호선, 2-17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소로2-174, 2-175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9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김제시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사용형태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소로	2	174	8	일반도로	국지도로	142	대로3-3	중로1-8	김제시 고시 제2002-33호 (02.03.04.)	-
금회 시행		소로	2	174	8	일반도로	국지도로	50	대로3-3	중로1-8	-	(기시행) 92m
결정	기정	소로	2	175	8	일반도로	국지도로	188	중로1-8	소로2-15	김제시 고시 제2002-33호 (02.03.04.)	-
	변경	소로	2	175	8	일반도로	국지도로	190	중로1-8	소로2-15		
금회 시행		소로	2	175	8	일반도로	국지도로	190	중로1-8	소로2-15	-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174호선	소로 2-174호선	- L=52m → 50m 감) 2m - A=472㎡ → 733㎡ 감) 39㎡	· 도로의 연장(m) 측정 오차
소로 2-175호선	소로 2-175호선	- L=188m → 190m 증) 2m - A=1,672㎡ → 1,533㎡ 감) 94㎡	· 도로의 연장(m) 측정 오차 · 종점부 가각변동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김제시 옥산동 281-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소로2-174호선, 소로2-175호선)사업
- 명칭: 하우스D~진주아파트간 소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변경) : 당초 A=2,099㎡, 변경 A=1,966㎡

1) 당 초

- 소로2-174호선 (L=52m, B=8m)
- 소로2-175호선 (L=188m, B=8m)

2) 변 경

- 소로2-174호선 (L=50m, B=8m)
- 소로2-175호선 (L=190m, B=8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김제시장(건설과)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1) 당 초 : 2022. 7. 15. ~ 2026. 12. 31.

2) 변 경 : 2022. 7. 15. ~ 202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사.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붙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소로2-174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외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자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김제시 옥산동	당초	303-16	천	140	5	김제시					
		변경	303-16	천	140	-						
2	김제시 옥산동	당초	279-11	천	101	4	김제시					
		변경	279-11	천	101	-						
3	김제시 옥산동	당초	480	구	2,698	30	김제시					
		변경	480	구	2,698	-						
4	김제시 옥산동		281-6	천	1,093	37	김제시					
5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10	천	220	220	이영숙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6 세원홍실아파트 102-1108				지분 11/396
		변경	281-10	천	220	220	김제시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10	천	220	220	김동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3번길 35, 301호				지분 12/396
		변경	281-10	천	220	220	김제시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10	천	220	220	김제시					지분 373/396
		변경	281-10	천	220	220	김제시					
6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28	답	176	176	윤복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53				지분 11/396
		변경	281-28	답	176	176	김제시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28	답	176	176	윤성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5-2 정도드림빌아파트 1536호				지분 5/396
		변경	281-28	답	176	176	김제시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28	답	176	176	장영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24-2층				지분 11/396
		변경	281-28	답	176	176	김제시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28	답	176	176	곽혜진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314-3 원룸 303호				지분 49/396
		변경	281-28	답	176	176	김제시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28	답	176	176	이은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21, 101동 1203호(금광동,다솜마을)				지분 49/396
		변경	281-28	답	176	176	김제시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28	답	176	176	김제시					지분 271/396
		변경	281-28	답	176	176	김제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소로2-175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외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자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김제시 옥산동		281-6	천	1,093	127	김제시					
8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27	답	191	191	이은미	충북 제천시 청전동 626 덕일아파트 1-407				지분 25/558
		변경	281-27	답	191	191	김제시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27	답	191	191	양승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15 청주신영강변 뜨란채아파트1 06-201				지분 47/558
		변경	281-27	답	191	191	김제시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27	답	191	191	이규현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곡리 281-5				지분 93/558
		변경	281-27	답	191	191	김제시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27	답	191	191	최종오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5-1 코아루아파트 307-1 202				지분 25/558
		변경	281-27	답	191	191	김제시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27	답	191	191	김제시					지분 368/558
		변경	281-27	답	191	191	김제시					
9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8	답	367	367	안순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74-18 삼정빌라 301호				지분 48.5/558
		변경	281-8	답	367	367	김제시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1-8	답	367	367	김제시					지분 509.5/558
		변경	281-8	답	367	367	김제시					
10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5-14	답	170	170	변고섭	전북 김제시 중앙8길 29, 1동 204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염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신탁	
		변경	285-14	답	170	170	김제시					

11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5-13	답	178	178	변고섭	전북 김제시 중앙8길 29, 1동 204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염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신탁	
		변경	285-13	답	178	178	김제시					
12	김제시 옥산동		286-12	천	171	61	김제시					
13	김제시 옥산동	당초	479	도	6,514	13	국	국토교통부				
		변경	479-22	도	1,024	13						
14	김제시 옥산동		286-14	답	14	14	김제시					
15	김제시 옥산동		286-17	답	170	170	김제시					
16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6-2	구	478	64	김제시					
		변경	286-2	구	478	62	김제시					
17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6-15	구	16	16	김상기	김제군 김제읍 교동리 225				
		변경	286-15	구	16	15	김제시					
18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6-16	구	7	-	김상기	김제군 김제읍 교동리 225				
		변경	286-16	구	7	1	김상기	김제군 김제읍 교동리 225				
19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6-19	답	160	160	최옥란	김제시 옥산길 161(옥산동)				
		변경	286-19	답	160	142	김제시					
20	김제시 옥산동	당초	286-13	답	96	96	최옥란	김제시 옥산길 161(옥산동)				
		변경	286-13	답	96	22	최옥란	김제시 옥산길 161(옥산동)				

□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및 지장물 조서(소로 2-175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당초	김제시 옥산동	286-19	가추	경량철골 샌드위치판넬	28	최옥란	김제시 옥산길 161				
				창고	경량철골 샌드위치판넬	12						
				태양광 발전설비	3kW	1						
				바닥	콘크리트	144						
				이동식 컨테이너		1						
				드릅		10						
2	변경	김제시 옥산동	286-12	조립식건물	경량철골 샌드위치판넬	52	강공석	김제시 옥산동 361				
3	변경	김제시 옥산동	286-17	정화조	FRP	1	강공석	김제시 옥산동 361				
4	변경	김제시 옥산동	286-1	조립식건물	경량철골 샌드위치판넬	4	최옥란	김제시 옥산길 161				
5	변경	김제시 옥산동	286-6	소형관정	농업용지하수	1	미정					
6	변경	김제시 옥산동	286-6	관정주	관정용	1	미정					

완주군 고시 제2026-130호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소로2-2호선, 공공청사:비봉면행정복지센터)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497-4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소로2-2호선, 공공청사:비봉면행정복지센터)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완주군수

1.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497-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사업
- 명 칭 : 비봉면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소로2-2호선) : A=4,657㎡ 중 620㎡
- 공공청사 : A=7,730㎡ 중 4,844㎡

구 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	증)1,076.34	1,076.34	-	증)2,238.88	2,238.8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완주군수(재정관리과)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마.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8. 5.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참조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함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공공청사(비봉면행정복지센터)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실시계획인가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0,011	4,844	-	-	-	-	-	-
1	비봉면 소농리	494-2	도로	60	1	국토교통부	-	-	-	-	-
2	비봉면 소농리	495-2	도로	278	50	국토교통부	-	-	-	-	-
3	비봉면 소농리	495-3	하천	200	57	국토교통부	-	-	-	-	-
4	비봉면 소농리	496-4	답	1,011	686	완주군	-	-	-	-	-
5	비봉면 소농리	497-3	대지	393	385	완주군	-	-	-	-	-
6	비봉면 소농리	497-4	대지	2,970	2,378	완주군	-	-	-	-	-
7	비봉면 소농리	497-5	답	131	131	완주군	-	-	-	-	-
8	비봉면 소농리	507	대지	294	283	완주군	-	-	-	-	-
9	비봉면 소농리	508	대지	595	196	완주군	-	-	-	-	-
10	비봉면 소농리	509	전	195	124	완주군	-	-	-	-	-
11	비봉면 소농리	510	대지	420	420	완주군	-	-	-	-	-
12	비봉면 소농리	755	도로	2,999	76	국토교통부	-	-	-	-	-
13	비봉면 소농리	756-53	하천	465	50	국토교통부	-	-	-	-	-

□ 도로(소로2-2호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실시계획인가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9,277	620	-	-	-	-	-	-
1	비봉면 소농리	755-4	도로	135	20	국토교통부	-	-	-	-	-
2	비봉면 소농리	494-8	창고	47	21	완주군	-	-	-	-	-
3	비봉면 소농리	494-7	전	86	56	완주군	-	-	-	-	-
4	비봉면 소농리	494-9	대지	60	4	완주군	-	-	-	-	-
5	비봉면 소농리	494-2	도로	906	19	국토교통부	-	-	-	-	-
6	비봉면 소농리	755	도로	2,999	71	국토교통부	-	-	-	-	-
7	비봉면 소농리	495-2	도로	278	34	국토교통부	-	-	-	-	-
8	비봉면 소농리	495-3	하천	200	54	국토교통부	-	-	-	-	-
9	비봉면 소농리	496-4	답	1,011	226	완주군	-	-	-	-	-
10	비봉면 소농리	497-4	대지	2,970	17	완주군	-	-	-	-	-
11	비봉면 소농리	497-2	전	192	94	재정경제부	-	-	-	-	-
12	비봉면 소농리	497-3	대지	393	4	완주군	-	-	-	-	-

고창군 고시 제2026-196호

고창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창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063-560-25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고창군수

1. 고창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원지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	165,371.5	-	165,371.5	전라북도고시 2010-171호 2010.07.09	계획 관리 지역

2. 고창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가. 군계획시설(유원지) 총괄(변경)조서

구분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165,371.5	-	165,371.5	100.0	5,063.75	증) 2.04	5,065.79	6,533.58	증) 2.04	6,535.62	
유희시설	반려동물놀이터 생태가든풀	반려동물놀이터 생태가든풀	10,310.2	-	10,310.2	6.2	-	-	-	-	-	-	
휴양시설	숙박시설, 야영장(1,2), 취사장, 야영장(3,4)	숙박시설, 야영장(1,2), 취사장, 야영장(3,4)	28,357.8	증) 2,462.5	30,820.3	18.7	413.07	-	413.07	573.15	-	573.15	
특수시설	-	-	-	-	-	-	-	-	-	-	-	-	
편익시설	일반음식점 및 매점, 매점, 펫카페, 블랙베리센터, 식물카페	일반음식점 및 매점, 매점, 펫카페, 블랙베리센터, 식물카페	9,634.4	-	9,634.4	5.8	2,656.68	-	2,656.68	2,791.52	-	2,791.52	
관리시설	도로, 주차장, 화장실, 광장, 관리동, 복합관리동	도로, 주차장, 화장실,화장실2 광장,관리동, 복합관리동	64,694.0	감) 2,462.5	62,231.0	37.6	305.81	증) 2.04	307.85	305.81	증) 2.04	307.85	
기타시설	웰빙식품센터 계류, 벽천, 배수지	웰빙식품센터 계류, 벽천, 배수지	16,534.5	-	16,534.5	10.0	1,688.19	-	1,688.19	2,863.10	-	2,863.10	
녹지시설	녹 지	녹 지	35,840.6	-	35,840.6	21.7	-	-	-	-	-	-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물 면적(㎡)						건축물 높이(층)		비고
									건축 면적			건축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165,371.5	0.0	165,371.5	100	5,063.75	2.04	5,065.79	6,533.58	2.04	6,535.62	-	-	
유희시설	소 계				10,310.20	0.00	10,310.20	6.2	0.00	0.00	0.00	0.00	0.00	0.00	-	-	
	1-1	1-1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놀이터	1,903.70	0.0	1,903.70	1.2	0.00	0.00	0.00	0.00	0.00	0.00	-	-	
	1-2	1-2	생태 가든풀	생태 가든풀	8,406.50	0.0	8,406.50	5.1	0.00	0.00	0.00	0.00	0.00	0.00	-	-	
휴양시설	소 계				28,357.80	2,462.5	30,820.30	18.7	413.07	0.00	413.07	573.15	0.00	573.15	-	-	
	3-1	3-1	숙박시설	숙박시설	6,870.00	0.0	6,870.00	4.2	362.80	0.00	362.80	522.88	0.00	522.88	2	2	
	3-2	3-2	야영장1	야영장1	5,963.50	0.0	5,963.50	3.6	0.00	0.00	0.00	0.00	0.00	0.00	-	-	
	3-3	3-3	야영장2	야영장2	5,236.20	0.0	5,236.20	3.2	0.00	0.00	0.00	0.00	0.00	0.00	-	-	
	3-4	3-4	야영장3	야영장3	3,197.00	2,462.5	5,659.50	3.4	0.00	0.00	0.00	0.00	0.00	0.00	-	-	일반 캠핑장
	3-5	3-5	야영장4	야영장4	6,954.00	0.0	6,954.00	4.2	0.00	0.00	0.00	0.00	0.00	0.00	-	-	글램핑
	3-6	3-6	취사장	취사장	137.1	0.0	137.1	0.1	50.27	0.00	50.27	50.27	0.00	50.27	1	1	
특수시설	소 계																
편익시설	소 계				9,634.40	0.0	9,634.40	5.8	2,656.68	0.00	2,656.68	2,791.52	0.00	2,791.52	-	-	
	5-1	5-1	일반 음식점 및 매점	일반 음식점 및 매점	1,799.50	0.0	1,799.50	1.1	334.00	0.00	334.00	434.00	0.00	434.00	2	2	
	5-2	5-2	매 점	매 점	1,615.10	0.0	1,615.10	1.0	300.00	0.00	300.00	300.00	0.00	300.00	1	1	
	5-3	5-3	펫카페	펫카페	340.00	0.0	340.00	0.2	50.00	0.00	50.00	50.00	0.00	50.00	1	1	휴게 음식점 50㎡
	5-4	5-4	블랙베리 센터	블랙베리 센터	2,440.00	0.0	2,440.00	1.5	939.10	0.00	939.10	999.30	0.00	999.30	-	1	일반 음식점
	5-5	5-5	식물카페	식물카페	3,439.80	0.0	3,439.80	2.1	1,033.58	0.00	1,033.58	1,008.22	0.00	1,008.22	-	1	
관리시설	소 계				64,694.00	-2,462.5	62,231.50	37.6	305.81	2.04	307.85	305.81	2.04	307.85	-	-	
			도 로	도 로	23,462.50	0.0	23,462.50	14.2	0.00	0.00	0.00	0.00	0.00	0.00	-	-	
	6-1	6-1	주차장1	주차장1	1,191.30	0.0	1,191.30	0.7	0.00	0.00	0.00	0.00	0.00	0.00	-	-	
	6-2	6-2	주차장2	주차장2	3,288.40	0.0	3,288.40	2.0	0.00	0.00	0.00	0.00	0.00	0.00	-	-	
	6-3	6-3	주차장3	주차장3	10,987.30	0.0	10,987.30	6.6	0.00	0.00	0.00	0.00	0.00	0.00	-	-	
	6-4	6-4	주차장4	주차장4	192.4	0.0	192.4	0.1	0.00	0.00	0.00	0.00	0.00	0.00	-	-	
	6-5	6-5	화장실1	화장실1	312.9	0.0	312.9	0.2	100.54	0.00	100.54	100.54	0.00	100.54	1	1	
	6-6	6-6	복합 관리동	복합 관리동	321.7	372.5	694.2	0.4	155.00	-15.96	139.04	155.00	-15.96	139.04	1	1	관리동 화장실
	-	6-7	-	화장실2	0	135.0	135	0.1	0.00	18.00	18.00	0.00	18.00	18.00	1	1	캠핑장 내신축
	6-7	6-8	중앙광장	중앙광장	15,192.90	-2,970.0	12,222.90	7.4	0.00	0.00	0.00	0.00	0.00	0.00	-	-	
	6-8	6-9	진입광장 1	진입광장 1	2,110.00	0.0	2,110.00	1.3	0.00	0.00	0.00	0.00	0.00	0.00	-	-	
	6-9	6-10	진입광장 2	진입광장 2	113.6	0.0	113.6	0.1	0.00	0.00	0.00	0.00	0.00	0.00	-	-	
	6-10	6-11	이벤트 광장	이벤트 광장	2,142.10	0.0	2,142.10	1.3	0.00	0.00	0.00	0.00	0.00	0.00	-	-	
	6-11	6-12	상징광장	상징광장	4,599.30	0.0	4,599.30	2.8	0.00	0.00	0.00	0.00	0.00	0.00	-	-	
	6-12	6-13	잔디광장	잔디광장	640.8	0.0	640.8	0.4	0.00	0.00	0.00	0.00	0.00	0.00	-	-	
	6-13	6-14	관리동	관리동	138.8	0.0	138.8	0.1	50.27	0.00	50.27	50.27	0.00	50.27	1	1	
기타시설	소 계				16,534.50	0.0	16,534.50	10.0	1,688.19	0.00	1,688.19	2,863.10	0.00	2,863.10	-	-	
	7-1	7-1	웰빙식품 센터	웰빙식품 센터	11,558.70	0.0	11,558.70	7.0	1,688.19	0.00	1,688.19	2,863.10	0.00	2,863.10	2	2	
	7-2	7-2	계 류	계 류	2,933.10	0.0	2,933.10	1.8	0.00	0.00	0.00	0.00	0.00	0.00	-	-	
	7-3	7-3	벽 천	벽 천	382.7	0.0	382.7	0.2	0.00	0.00	0.00	0.00	0.00	0.00	-	-	
	7-4	7-4	배수지	배수지	1,660.00	0.0	1,660.00	1.0	0.00	0.00	0.00	0.00	0.00	0.00	-	-	
녹지	8-1	8-1	녹 지	녹 지	35,840.60	0.0	35,840.60	21.7	0.00	0.00	0.00	0.00	0.00	0.00	-	-	

다. 도로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지구내도로	515	용산리 57-4	용산리 4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2	지구내도로	182	용산리 43-4	용산리 44-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지구내도로	81	용산리 759-38	용산리 759-3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지구내도로	173	용산리 749-41	용산리 44-4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6	지구내도로	127	용산리 749-55	용산리 44-4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6	지구내도로	96	용산리 44-48	용산리 759-4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1	1	5	산책로	311	용산리 759-35	용산리 44-3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1	2	5	산책로	12	용산리 49-14	용산리 759-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1	3	5	산책로	8	용산리 750-12	용산리 49-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1	4	5	산책로	35	용산리 759-46	용산리 759-1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2	1	3	산책로	110	용산리 759-12	용산리 59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2	2	3	산책로	15	용산리 597	용산리 59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2	3	3	산책로	58	용산리 759	용산리 759-4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2	4	3	산책로	164	용산리 759-10	용산리 759-1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2	5	3	산책로	17	용산리 759-46	용산리 759-4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2	6	3	산책로	77	용산리 759-10	용산리 759-1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1	2	산책로	34	용산리 759	용산리 759-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2	2	산책로	51	용산리 759-16	용산리 759-4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5	2	산책로	10	용산리 602	용산리 60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6	2	산책로	70	용산리 759-27	용산리 759-28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8	1.5	산책로	34	용산리 759-17	용산리 759-1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9	1.5	산책로	28	용산리 759-12	용산리 759-4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10	1.5	산책로	13	용산리 759-12	용산리 759-4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12	1.5	산책로	13	용산리 759-12	용산리 759-1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13	1.5	산책로	19	용산리 759-46	용산리 759-46	보행자전용도로	

라.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유원지	◦ **세부시설 및 부지면적 변경** -유희시설 : 변경없음 -휴양시설 : 야영장 증설 -편익시설 : 변경없음 -관리시설 : 복합관리동 변경, 화장실2 신설 -녹지시설 : 변경없음 ◦ **건축물 변경** -복합관리동(변경) : 139.04㎡ [당초:155.00㎡→변경:139.04㎡] -화장실2(신설) : 18.00㎡	◦ 금회 야영장(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증설 등 도입시설 변경을 통하여 유원지 전반에 대한 이용률 제고 및 유원지 활성화 도모

3.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도 (기정) >



<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도 (변경) >

